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 9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성훈 한양대학교 조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그리고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동 제도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함
 - 일몰을 연장할 경우 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함

2. 제도 현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함
 - 2012년 동 제도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조문명으로 도입되었음
 - 최초 도입 당시에는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었음
 -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과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음
 -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함
 -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75%를 세액공제함
 - 2018년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목적이 추가되면서 조문명이 현재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세액공제 기간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인원 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 기간이 단년도에서 2년간 지원으로 확대됨

- 2017년 9월에 발표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실적은 약 514억원임
 - 이 중 74.32%(382억원)가 법인세로 인한 조세지출임

<표 1>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의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규모			비중	
	합계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2013년	301	44	257	14.62	85.38
2014년	372	71	301	19.09	80.91
2015년	426	82	344	19.25	80.75
2016년	514	132	382	25.68	74.32
2017년(전망)	684	204	480	29.82	70.18
2018년(전망)	783	219	564	27.97	72.03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4~2017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처음 발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세지출실적은 301억원이었음
 - 이후 조세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4억원을 기록함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과 2018년의 조세지출규모는 각각 684억원과 783억원으로 전망됨

3. 효과성 분석

- (분석방법) 본 조세특례의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 분석방법을 사용함
 - 이중차분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함
 - 2014년 이전에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정의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정의됨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준 개편에 따라 본 조세특례 정책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기업들은 처치집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통제집단이 됨

-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기업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사용함
 - 한국고용정보원은 2011~2015년 기간에 대한 개별 기업의 연도·연령별 고용정보 자료를 제공함
 - 한국기업데이터자료는 동일 기간에 대한 기업의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 재무자료를 포함함
 - 본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제도로 흑자기업이 주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흑자기업임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하여 2013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분석함
 - 분석에 포함된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함
 - 단절점 3~5% 이내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79%임
 -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기업 수가 10개 미만임
 -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업은 전체 표본에서 업종별로 약 4~5% 차지하는 수준이며, 다른 업종의 기업은 약 0.5~1% 차지하는 수준임

- (분석결과) <표 2>에 따르면 본 조세특례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함
 -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었다면, [처치집단×처치연도 더미]의 추정계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함
 - 전체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처치집단×처치연도 더미]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음(-)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 추정계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지만, 표본선정 반경에 상관없이 추정계수가 절대값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며, 이는 대체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 변화 수준이 2014년 전과 후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일반고용에 대한 [처치집단×처치연도 더미]의 추정계수 크기는 표본선정 반경이 증가할수록 -0.956에서 0에 가까워짐
 - 청년고용에 대한 [처치집단×처치연도 더미]의 추정계수 크기는 표본선정 반경이 증가할수록 -0.18에서 -0.5에 가까워짐

- 기업의 고용증대는 동 조세특례보다는 기업의 성장성과 같은 경영환경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에서 대체로 매출액 증가율이 높을수록 고용증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5) DID	(6)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청년고용	△일반고용	△청년고용	△일반고용	△청년고용
추정방법	FD	FD	FD	FD	FD	FD
전체 표본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처치집단 ×처치연도	-0.956 (1.114)	-0.181 (0.797)	-0.297 (0.793)	-0.589 (0.576)	-0.203 (0.678)	-0.437 (0.513)
매출액 증가율	3.074*** (1.086)	1.781 (1.108)	2.104*** (0.791)	2.098*** (0.773)	2.406*** (0.759)	2.249*** (0.671)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5.283** (2.193)	-2.029* (1.225)	4.912*** (1.668)	-0.188 (0.940)	5.665*** (1.461)	-0.166 (0.794)
처치연도 더미변수	-1.035 (0.836)	1.031* (0.572)	-0.942 (0.615)	1.039** (0.420)	-0.990* (0.530)	1.394*** (0.397)
Observations	233	233	380	380	518	518
R-squared	0.051	0.024	0.039	0.029	0.048	0.026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을 세부 업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더라도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 표본확보가 가능한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한정·구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4. 타당성 분석

-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동 조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타당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 소규모 기업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확충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절감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임
 - 제조업의 경우 1999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4.5% 수준이었음
 - 이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2014년 거의 절반 수준인 52.5%까지 하락하였음
 - 2015년부터 해당 비율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7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약 5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실패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며, 이는 다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임금인상 시 사회보험료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임

- 이에 동 조세특례를 통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세특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만으로는 기업에 고용된 전체 인력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인력난이라는 미스매치 문제가 존재함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의 양적인 고용증가만을 지원하는 한계가 존재함

- 한편,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율은 각각 69.6, 71.7, 72.0% 수준임
 - 반면, 5인 이상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 이상임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보험(99.7%)과 국민연금(98.7%)에 가입함

- 이처럼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계층으로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나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해당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동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됨

- 2018년 정부는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함
 - 이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임
 - 최저임금은 주로 대기업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경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험료는 임금과 비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고용증가 인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중 일부가 경감되는 효과가 존재함

- (수행방법의 적절성: 사회보험료 산정방법) 현행 제도는 연평균 총급여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함으로써 기업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추정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과 본 조세특례에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가령,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현행 제도가 실제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라도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와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차선책으로써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험료 정산절차로 인하여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정산은 4월 이후에 이루어짐
 -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반면, 실질적인 세수실적 증가 등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직 및 퇴직자들이 발생하여 고용증가 인원이 신규 채용 인원보다 적을 수 있고, 이에 고용증가 인원에 해당되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수행방법의 적절성: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시장에서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 진작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실업률이 높음
 - 30~44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음
- (타 제도와의 중복성: 고용증대세제)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용의 양적 증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동 제도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는 유사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두 제도의 중복적용이 허용됨
-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직접적인 지원이고, 동 제도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보조함으로써 「고용증대세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타 제도와의 중복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동 제도는 재정지출사업 중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함
- 하지만 동 제도의 경우 재정지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회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성의 문제는 없음

5.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의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 고용증가에는 매출액 증가율로 대변되는 기업의 성장성이 다른 변수들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출의 특성상 수혜대상 기업이 후자기업이어야만 하고, 이와 함께 고용이 증가하는 기업은 기업이 성장단계에 있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 제도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성 때문에 증가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동 제도의 효과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조세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하나의 조문에 해당하는 제도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혹은 배타적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됨
 - 동 제도는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고용지원제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의 영향으로 인해 동 제도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기업들은 최저한세, 중복적용 배제 등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세제혜택 중에 선택 신청함
 - 이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이 고용 혹은 투자와 같은 요건이 없어 추가적인 경영 부담이 적은 조세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이에 효과성을 근거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고용지원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조세특례제도들을 고용친화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함

- 특히 타당성 분석 결과 동 조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실업률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 관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및 향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노동수요자에 대한 고용의 양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고용의 양적 지원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사중손실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사중손실이란 동 제도 등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제도와 관계없이 고용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감면을 받아 실질적인 고용증대 없이 조세지출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고용의 양적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의 조세특례 중 고용과 관계없는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조세특례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중의 하나임

- 동 조세특례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제도 중 고용증대가 목적인 조항은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가령, 「고용증대세제」에서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세액공제액을 현행 제도보다 1인당 300만원(청년 등), 150만원(그 외) 추가 지원하고, 이에 대응되는 동 조세특례 항목은 삭제하는 방안임

- 또한 동 제도와 「고용증대세제」의 세제혜택 우대계층 판단 기준 등이 상이하
여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임

- 하지만, 현 제도를 「고용증대세제」에 통합하는 방안은 행정상의 간소화를 통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동 제도의 장
점과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장점) 두 제도를 통합할 경우 세제의 간소화를 통해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행
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점1) 동 제도를 단순히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
로 통합한다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
로 현행 제도에 비해 세제혜택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점2) 「고용증대세제」 중심으로의 통합은 급여비례지원방식이라는 동 제도의
장점과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사라질 수 있음
 - (단점3) 두 제도를 통합하더라도 고용증대라는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과세행정 개선사항) 국세청에서 동 제도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고용지원
조세특례 수혜기업의 고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기업은 동 제도의 신청서식을 통해 과세당국에 고용현황을 제공하나 국세청에
서는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특히, 동 제도의 수혜대상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상당액
을 계산하기 위한 인건비 등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현황을 과
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목 차

I. 서론	19
II. 제도 현황	25
1. 제도 연혁 및 개요	27
가. 제도 연혁	27
나. 현행 제도	29
2.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규모	36
3. 법인세 신고자료의 조세지출 현황	39
4. 소득세 신고자료의 조세지출 현황	46
III. 효과성 분석	53
1. 선행연구	56
2. 분석방법	60
가.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한 이중차분 분석(Regression DID)	61
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64
2. 분석자료	68
3. 기초통계분석	69
4. 회귀분석	78
5. 강건성 분석	85
가. 기초통계분석	85
나. 회귀분석	95
6. 소결	96
7. 본 연구의 한계	98

IV. 타당성 분석	99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101
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임금지원의 적절성	101
나. 소규모 기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 지원의 적절성	106
다. 최저임금 증가	107
2. 수행방법의 적절성	109
가. 사회보험료 산정방법의 적절성	109
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의 적절성	112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118
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9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120
V.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125
1. 종합평가	125
2. 제도 개선방안	129
참고문헌	131
<부 록>	133
부록 I. 고용보험료율	135
부록 II.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36
부록 III. 2016년 결산법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143
부록 IV.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148

표 목 차

<표 II-1> 본 조세특례의 제도 변화	28
<표 II-2> 본 조세특례의 개요	30
<표 II-3>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율	34
<표 II-4>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의 규모 변화	36
<표 II-5> 세목별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37
<표 II-6> 전체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38
<표 II-7>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39
<표 II-8> 연도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40
<표 II-9> 법인의 연도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41
<표 II-10>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업태별)	43
<표 II-11>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매출액 규모별)	45
<표 II-12>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46
<표 II-13>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업태별)	49
<표 II-14>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51
<표 III-1> 2013년 이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65
<표 III-2> 2014년 이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66
<표 III-3>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67
<표 III-4> 기초통계량	70

<표 III-5> 표본선정 반경 $\pm 3\%$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	73
<표 III-6>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	73
<표 III-7>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	74
<표 III-8>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79
<표 III-9>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	80
<표 III-10>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	81
<표 III-11>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	82
<표 III-12>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83
<표 III-13>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	83
<표 III-14>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	84
<표 III-15>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	84
<표 III-16>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87
<표 III-17>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90
<표 III-18>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90
<표 III-19> 표본선정 반경 $\pm 10\%$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91
<표 III-20>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I	95
<표 III-21>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V	96
<표 IV-1> 기업규모별 임금 총액(제조업)	102
<표 IV-2>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103
<표 IV-3> 기업규모별 미충원 인원 추이	103
<표 IV-4> 사업체 규모별 미충원 사유	104
<표 IV-5>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비교(제조업)	105
<표 IV-6> 2017년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107
<표 IV-7> 고용보조지표의 정의	115
<표 IV-8> 잠재경제활동인구 구분	117
<표 IV-9> 동 제도와 「고용증대세제」 비교	119
<표 IV-10>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혁	121
<부표 I-1> 고용보험료율	135

<부표 I-2>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135
<부표 II-1>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36
<부표 II-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37
<부표 II-3>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38
<부표 II-4>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39
<부표 II-5>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40
<부표 II-6>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41
<부표 II-7>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42
<부표 III-1>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산 규모별)	143
<부표 III-2>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본금 규모별)	144
<부표 III-3>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소득금액 규모별)	145
<부표 III-4>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146
<부표 III-5>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총부담세액 규모별)	147
<부표 IV-1>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148
<부표 IV-2>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149
<부표 IV-3>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결정세액 규모별)	150

그림 목 차

[그림 III-1] 이중차분모형의 처치효과	64
[그림 III-2] 연도별 평균 고용 변화	71
[그림 III-3]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3\%$ 이내 관측치	75
[그림 III-4]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	75
[그림 III-5]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	76
[그림 III-6]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3\%$ 이내 관측치	76
[그림 III-7]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	77
[그림 III-8]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	77
[그림 III-9] 연도별 평균 고용 변화(강건성 분석)	88
[그림 III-10]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	92
[그림 III-11]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	92
[그림 III-12]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10\%$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	93
[그림 III-13]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	93
[그림 III-14]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	94
[그림 III-15]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10\%$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	94
[그림 IV-1]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108
[그림 IV-2] 연령대별 계절조정실업률 추이	113
[그림 IV-3] 청년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115
[그림 IV-4] 전체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116
[그림 IV-5] 2017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17

I. 서론



I. 서론

- 중소기업의 고용과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조세지출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여 의무심층평가대상에 포함됨
 -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약 514억원임

- 본 연구는 2018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동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 그리고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함
 -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동 제도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함
 - 일몰을 연장할 경우 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이용하여 동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함
 - 동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이후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는 존재하지 않음
 - 하지만 2014년부터 중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 수혜대상 여부가 변화된 기업들이 존재함
 - 이중차분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함

- 효과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용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 및 경영정보를 결합하여 구축함
 - 분석대상 기간은 2012~2015년임
 -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는 기업의 연령대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¹⁾

1)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는 오종현·최충(2017)의 연구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임

- 동 조세특례는 세제지원에 있어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고용 인원 정보가 분석에 필요함
 - 한국기업데이터(KED)는 고용정보 이외의 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기업연한 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를 제공함²⁾
 - 오종현·최충(2017)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와 KIS-Value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나, KIS-Value 자료는 외부감사대상 법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상인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음
- 한편 동 조세특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목적도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음
- 동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당 목적으로 인한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수 없음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에 대해 논의함
- 고용지표 및 소규모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자료를 통해 동 제도의 필요성을 점검함
 -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등 동 조세특례제도 설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함
 - 유사한 목적의 다른 조세특례 및 재정지출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유사·중복성이 큰 사업들 간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연장을 고려할 경우 앞의 효과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이하의 각 장에서는 다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제II장에서는 동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

2) 본 연구는 본원의 장우현 박사가 한국기업데이터(KED)로부터 제공받은 개별기업 원시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제Ⅲ장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함
- 제Ⅳ장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제도 연혁 및 개요

가. 제도 연혁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함
 - 2012년 동 제도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조문명으로 도입되었음
 - 최초 도입 당시에는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었음
 -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과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음
 -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함
 -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75%를 세액공제함
 - 2018년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목적이 추가되면서 조문명이 현재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세액공제 기간이 증가하였음
 - 조문명이 변경된 것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인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 기간이 단년도에서 2년간 지원으로 확대됨

〈표 II -1〉 본 조세특례의 제도 변화

구분	내용
2011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전문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도입
2014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연장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연장
2016년 12월 20일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증가 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
2017년 12월 19일	○ 단년 지원에서 2년 지원으로 변화 ○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킨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도입 ○ 조문 명칭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개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동 조세특례가 도입되기 전에도 고용증대가 목적인 조세특례가 존재하였음³⁾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최초의 세제지원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2004년 7월 26일 처음 도입되었음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2004년 당시 고용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업률 안정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⁴⁾,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일몰연장을 추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⁵⁾,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005년 폐지함⁶⁾
 -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세액공제규모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만원이었음

3) 해당 내용은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힘

4)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 재인용, 원출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0023, 제출연월일: 2004. 6., 제안자: 정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5)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 재인용, 원출처: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대, 제248회, 제6차, 2004. 7. 15.,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6)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 재인용, 원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173715, 제안연월일: 2005. 12. 28., 제안자: 재정경제위원장,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이후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여 20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되었음⁷⁾
 - 이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였음
 - 2005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액공제규모를 기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재도입함⁸⁾
 - 한편, 세액감면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수혜대상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함

나. 현행 제도⁹⁾

- (수혜대상) 본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흑자기업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으며,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였거나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시킨 중소기업임
 - 고용을 창출했다는 의미는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본 제도의 간접적인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로 인해 취업의 문이 넓어진 근로자 계층임
 - 저임금 근로자를 신규로 가입시킨 경우의 수혜대상은 소규모 기업에 한정됨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이 대상임
 -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인 저임금 근로자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 지원함

7)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 재인용, 원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7758, 제안연월일: 2010. 2. 26.,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8)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 재인용, 원출처: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8대, 제287회, 기획재정제 5차, 2010. 2. 24.,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9) 해당 내용은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 pp. 547~553)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이후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힘

〈표 II -2〉 본 조세특례의 개요

구분	내용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도목적	○ 중소기업 고용창출 ○ 영세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수혜대상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당해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킨 소규모 기업
수혜내용 ¹⁾	○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100%를 2년간 지원 - 청년 외: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를 2년간 지원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

주: 1) 수혜내용은 사실상 세액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이 지급한 평균 급여에 비례한다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사회보험료율임. 즉, 세액공제금액이 실제로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를 위해 지급한 사회보험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음

자료: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의 <표 II-1>(p. 547) 수정

□ (중소기업의 범위) 한편, 본 조세특례는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매출액과 자산총액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매출액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신성장 서비스업)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의미함¹⁰⁾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상시근로자의 정의) 본 조세특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고용증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의함¹¹⁾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총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상시근로자로 간주함
 - 또한, 임원이나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 등의 특수관계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함
 - 즉, 비정규직 내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가 될 수 있음
- (청년의 정의) 청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며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임¹²⁾
- 한편,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도 청년에 포함됨¹³⁾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즉, 군복무 기간이 6년 이상일 경우 3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함

-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후 3~10년의 기간이 지난 여성임¹⁴⁾
 -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은 해당 여성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록으로 확인함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의 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이며,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느냐에 따라 과세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규모가 달라짐
 - 한편, 과세기간 중 특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면 기업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효과는 감소할 수 있음
 - 이에 특정 시점만이 아닌 매월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text{전체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quad \text{식 (II-1)}$$

$$\text{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quad \text{식 (II-2)}$$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text{전체 상시근로자 수} - \text{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I-3)}$$

- (고용증가 인원) 고용증가 인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text{청년 등 고용증가 인원}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I-4)}$$

$$\text{청년 등 외 고용증가 인원}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I-5)}$$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평균 총급여액) 한편,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균 급여액을 식 (II-6)과 (II-7)을 통해 산출해야 함¹⁵⁾
 - 세액공제액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아닌 기존 근로자의 급여 수준도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을 사용함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총급여액은 해당 집단에 속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임
 - 그 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 또한 해당 집단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임
 - 즉, 평균 급여액 산정 시 기준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의 급여액도 포함 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text{청년 등 평균 총급여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I-6)}$$

$$\text{청년 등 외 평균 총급여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I-7)}$$

- 식 (II-6)과 (II-7)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그 외 상시근로자에게 과세기간 중 지급한 평균 총급여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임
 - 이는 식 (II-6)과 (II-7)에서 계산한 청년 등과 그 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에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됨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과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text{청년 등 1인당 사회보험료} = \text{청년 등 평균 총급여액}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quad \text{식 (II-8)}$$

$$\text{청년 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 \text{청년 등 외 평균 총급여액}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quad \text{식 (II-9)}$$

□ (세액공제액) 기업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받게 되는 세액공제액은 아래의 식 (II-10) ~ (II-12)에 의해 결정됨

$$\begin{aligned} \text{청년 등 고용증가 인원의} & & \text{청년 등 1인당 사회보험료} \times & & \text{식 (II-10)} \\ \text{사회보험료 상당액} & = & \text{청년 등 고용증가 인원} &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청년 등 외 고용증가 인원의} & & \text{청년 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times & & \text{식 (II-11)} \\ \text{사회보험료 상당액} & = & \text{청년 등 외 고용증가 인원} & \end{aligned}$$

$$\text{세액공제액} = \text{청년 등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 \text{청년 등 외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times 0.5 \quad \text{식 (II-12)}$$

□ (사회보험료율) 한편,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5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¹⁶⁾

<표 II -3>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율

(단위: %)

연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총사회보험
2012년	2.900	0.1900	4.5	0.8~1.4	0.7~35.4 (1.77)	9.0900~44.3900 (10.1600~10.7600)
2013년	2.945	0.1929	4.5	0.9~1.5	0.6~34.0 (1.70)	9.1379~43.1379 (10.2379~10.8379)
2014년	2.995	0.1962	4.5	0.9~1.5	0.6~34.0 (1.70)	9.1912~43.1913 (10.2912~10.8912)
2015년	3.035	0.1988	4.5	0.9~1.5	0.7~34.0 (1.70)	9.3338~43.2338 (10.3338~10.9338)
2016년	3.060	0.2004	4.5	0.9~1.5	0.7~34.0 (1.70)	9.3604~43.2604 (10.3604~10.9604)
2017년	3.060	0.2004	4.5	0.9~1.5	0.7~32.3 (1.70)	9.3604~41.5604 (10.3604~10.9604)
2018년	3.120	0.2303	4.5	0.9~1.5	0.7~28.1 (1.65)	9.4503~37.4503 (10.4003~11.0003)

주: 1. 사회보험료율은 매년 12월 31일 기준(단, 2018년은 6월 30일 기준)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7.38%(2017년 이전은 6.55%) 적용

3. 괄호 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평균을 적용한 경우

자료: 1.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230>

2.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

3.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retrieveEi0301Info.do>

4.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2~2018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2018년 6월 30일 현재 사회보험료율은 9.45~37.45%로 기업규모 및 산업종류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함
 - 대부분의 차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평균 보험료율인 1.65%를 적용하면 총사회보험료율은 10.4~11.0% 수준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각 산업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율도 상승하는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인 석탄광업의 보험료율은 28.1%로 매우 높은 반면, 위험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의 보험료율은 0.7%임¹⁷⁾
 - 고용보험 사용자(혹은 사업자) 부담분 중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로 증가함¹⁸⁾
 -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25%
 - 150인 이상 기업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이면서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0.85%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기업규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산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¹⁹⁾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율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0.65%로 일정함²⁰⁾
 -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총급여의 6.24%로 사용자는 이의 1/2인 3.12%를 부담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료의 7.38%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함
 - 2017년 이전에는 6.55%였음
 - 국민연금 총급여의 9%로 사용자는 이의 1/2인 4.5%를 부담함
- 사회보험료율은 대체로 매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상승에서 비롯되었음
 -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율은 2012년 2.900%에서 2013년 2.945%, 2014년 2.995%, 2015년 3.0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17) <부표 II-1>부터 <부표 II-7> 참고

18) <부표 I-1> 참고

19) <부표 I-2> 참고

20) <부표 I-1> 참고

-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이전 6.55%에서 2018년 7.38%로 인상됨
- 국민연금보험료율은 4.5%로 일정하였음
- 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0.8~1.4%에서 2013년 0.9~1.5%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이는 2013년 7월 1일 실업급여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율이 0.55%에서 0.65%로 상승하였기 때문임²¹⁾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전체적인 평균은 1.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산업마다 다른데, 최저 보험료율은 점차 증가한 반면 최고 보험료율은 점차 감소하였음

2.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규모

- 2017년 9월에 발표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도 조세지출실적은 약 514억원임
 - 이 중 74.32%(382억원)가 법인세로 인한 조세지출임

<표 II -4>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의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규모			비중	
	합계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2013년	301	44	257	14.62	85.38
2014년	372	71	301	19.09	80.91
2015년	426	82	344	19.25	80.75
2016년	514	132	382	25.68	74.32
2017년(전망)	684	204	480	29.82	70.18
2018년(전망)	783	219	564	27.97	72.03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4~2017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처음 발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 <부표 1-1> 참고

- 2013년 조세지출실적은 301억원이었음
- 이후 조세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4억원을 기록함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과 2018년의 조세지출규모는 각각 684억원과 783억원으로 전망됨

- 2016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514억원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지출합계인 27조 2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9% 수준임
 - 법인세의 총조세지출은 약 6조 6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382억원인 0.58%가 동 조세특례로 인해 발생함
 - 소득세의 총조세지출은 약 20조 6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0.06%인 132억원이 동 조세특례로 인하여 발생함

<표 II -5> 세목별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소득세	법인세	합계
세목별 조세지출(억원)		(A)	205,821	66,264	272,08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출규모(억원)	(B)	132	382	514
	비중(%)	(C=B/A×100)	0.06	0.58	0.19

주: 2016년도 실적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2016년 전체 조세지출 37조 4천억원 중 약 0.14%를 차지하며, 국세가 약 0.02%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총국세수입은 약 242조 6천억원이었으며, 조세지출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조정 국세수입은 280조원이었음
 - 조정 국세수입에서 총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37%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동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율은 약 0.02%임
 - 이는 조정 국세수입에서 동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II -6> 전체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국세수입총액	(A)	2,425,617	
국세감면액	(B)	374,436	비중
고용지원 목적 조세지출	(C)	3,619	0.9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D)	514	0.14%
조정 국세수입액	(E=A+B)	2,800,053	
국세감면율	(F=B/E×100)	13.37%	
고용지원 목적 조세지출	(G=C/E×100)	0.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H=D/E×100)	0.02%	

주: 2016년도 실적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동 조세특례와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2016년 조세지출규모는 3,619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0.97%를 차지함
 - 고용지원 목적의 조세지출로 인한 국세감면율은 약 0.13%임

- 2016년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2%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중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약 2,325억원으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의 약 64.24%를 차지함
 - 고용지원 조세특례 중 그 다음으로 지출규모가 큰 조세특례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조세지출은 약 558억원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지원 조세특례 중 세 번째로 지출규모가 큼
 - 고용지원을 위한 총조세지출 3,619억원 중 동 조세특례 포함 상위 3개 조세지출이 약 93.87%(3,397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7〉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에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조항	조세지출 (억원)	비중 (%)
고용지원 목적 조세지출	-	3,619	100
「조특법」상 조세지원	-	3,571	98.6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30	2,325	64.2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5	558	15.4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30의4	514	14.2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4	158	4.3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30의2	15	0.4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30의3	0.94	0.0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3	0.06	0.0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2	0.02	0.00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	48	1.33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30의4	48	1.33

주: 2016년도 실적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3. 법인세 신고자료의 조세지출 현황

-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의 경우 2,014개의 법인이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 2016 과세연도 중 동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 수는 3,804개로 동 제도의 신청 법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II -8> 연도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단위: 개, %)

신고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중소기업법인 수	결산연도	동 특례 신청법인 수	동 특례 신청 중소기업 비율
2013	421,040	2012	2,014	0.4783
2014	449,351	2013	2,372	0.5279
2015	479,325	2014	2,624	0.5474
2016	517,628	2015	3,254	0.6286
2017	561,219	2016	3,804	0.6778

주: 1. 동 특례를 신청한 중소기업 비율 계산 시 우리나라 법인 대부분의 결산월이 12월이므로 신고연도는 과세연도 다음 해라 가정함
 2. 신고연도 기준 동 특례의 신청법인 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16년도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신청법인 수는 3,263개로 결산연도 기준 2015년 신청법인 수인 3,254개와 유사함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18(조기공개)
 2.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증가 추세는 최근 법인세 신고법인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추세임
 - 신고연도 기준으로 2013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수는 421,040개였으며, 이후 2014년 449,351개, 2015년 479,325개, 2016년 517,628개, 2017년 561,21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 동 특례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동 특례를 활용한 중소기업이 2012년 0.48%에서 2017년 0.68%로 매년 증가하였음
 - 다만 전체 중소기업에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1%가 되지 않아 동 제도의 활용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음

- 동 제도를 신청한 법인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동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이 2016년 결산법인 기준 약 23.94%를 차지함
 - 대상 기업의 2016년 평균 총공제감면세액은 약 5,260만원이었으며, 동 제도로 인한 평균 공제세액은 약 1,259만원이었음

<표 II -9> 법인의 연도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결산 연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H= F/D*100)	(I= F/B*100)	
	(A)	(B)	(C)	(D)	(E)	(F)	(G)		
2012	2,014	2,701,938	1,342	125,298	62.21	25,036	12.43	19.981	0.927
2013	2,372	3,041,917	1,282	137,233	57.86	30,387	12.81	22.143	0.999
2014	2,624	3,159,789	1,204	129,143	49.22	33,979	12.95	26.311	1.075
2015	3,254	3,612,755	1,110	173,924	53.45	38,028	11.69	21.865	1.053
2016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주: 연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동 특례는 동 제도를 신청한 법인의 실효세율을 평균적으로 약 1.014%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
 - 실효세율 감소폭은 과세표준 대비 동 특례로 인한 세액공제규모로 정의함

- 2016년 결산법인 중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3,804개 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기업이 30.18%인 1,148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의 약 27.08%인 1,030개 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 그 밖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7개(9.75%), 건설업 358개(9.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2개(8.4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3개(6.39%) 기업이 신청하여 다른 업종보다 동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 6개 업종에 속한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27%임

- 동 제도를 통해 실효세율을 가장 크게 감소시킨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임
 - 동 제도는 해당 업종의 실효세율을 약 5.3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존재하였음
 - 한편 동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동 제도로 인하여 각각 0.761%포인트, 0.68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침
 - 이는 전체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인 1.014%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임

〈표 II -10〉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업태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별 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E)	금액	(F)	금액	(G)		
		(A)	(B)	(C)	(D)	(E)	(F)	(G)	$(H=F/D*100)$		$(I=F/B*100)$					
전체																
건설업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광업	358	330,089	922	9,024	25.21	4,358	12.17	48,290	1.320							
교육 서비스업	1	2,471	2,471	8	8.33	8	8.33	100,000	0.337							
금융 및 보험업	9	3,853	428	242	26.90	116	12.94	48,088	3.022							
농업, 임업 및 어업	2	315	158	17	8.34	8	3.97	47,543	2.514							
도매 및 소매업	3	8,924	2,975	23	7.52	15	5.06	67,242	0.1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8	1,214,556	1,058	24,194	21.07	9,248	8.06	38,226	0.7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	36,157	1,247	1,518	52.34	1,135	39.15	74,796	3.1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	14,965	935	467	29.20	342	21.34	73,102	2.282							
숙박 및 음식점업	243	64,723	266	3,867	15.91	3,432	14.13	88,758	5.303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9	72,352	731	1,929	19.48	1,218	12.30	63,134	1.683							
운수업	10	4,709	471	124	12.37	62	6.21	50,186	1.3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7	104,311	975	2,489	23.27	1,293	12.09	51,958	1.240							
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54	154	0	0.15	0	0.15	100,000	0.095							
제조업	322	196,190	609	12,425	38.59	5,010	15.56	40,323	2.55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30	2,449,548	2,378	124,731	121.10	16,711	16.22	13,397	0.68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1	194,307	524	18,225	49.12	4,619	12.45	25,344	2.37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	17,865	777	535	23.24	182	7.92	34,055	1.019							
	32	9,330	292	267	8.34	150	4.68	56,054	1.603							

자료: 국제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6년 결산법인 중 기업규모별로 동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들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업규모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봄
 - 기업규모를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통계는 <부록 III> 참고

- 전체 3,804개 신고기업 중 52.31%인 1,990개 기업이 매출액 20~200억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매출액 2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동 조세특례의 신청법인 수가 감소함
 - 반면 매출액 2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동 제도의 신청법인 수가 감소함
 -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한계수익이 작아 고용인원을 증가시키기 어렵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절대적인 기업 수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매출액이 4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함

- 동 조세특례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은 대체로 기업규모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동 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약 2.431%포인트 감소함
 - 반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동 제도를 통해 실효세율을 약 0.495%포인트 감소시킴

<표 II -11>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F)	(G)		
			금액	(B)		금액	(D)		금액	(E)				금액	(F)
전체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3억원 이하	137		2,821	21	114	0.83	69	0.50	60.386	2.431					
3억원~5억원	122		4,173	34	136	1.12	96	0.79	70.311	2.296					
5억원~10억원	311		28,132	90	671	2.16	413	1.33	61.569	1.469					
10억원~20억원	458		53,483	117	3,048	6.66	1,022	2.23	33.534	1.911					
20억원~50억원	736		158,464	215	8,297	11.27	3,366	4.57	40.568	2.124					
50억원~100억원	580		279,535	482	14,861	25.62	5,961	10.28	40.111	2.132					
100억원~200억원	674		697,944	1,036	36,047	53.48	11,077	16.44	30.730	1.587					
200억원~300억원	286		565,883	1,979	23,290	81.43	6,826	23.87	29.310	1.206					
300억원~500억원	262		990,302	3,780	41,617	158.85	7,891	30.12	18.961	0.797					
500억원~1,000억원	178		1,139,595	6,402	48,469	272.30	7,208	40.50	14.872	0.633					
1,000억원 초과	60		804,487	13,408	23,534	392.24	3,978	66.30	16.904	0.495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소득세 신고자료의 조세지출 현황

- 2012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사업자 중 동 조세특례를 활용한 인원 수는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함
 - 2012년 1,326명의 개인사업자가 동 조세특례를 활용하였음
 - 2014년 동 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는 1,767명으로 2012년에 비해 441명 증가함
 - 반면 2015년과 2016년에 동 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는 각각 3,227명과 4,396명으로 2014년 이전과 큰 차이를 보임

<표 II -12>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과세 연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개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A)	(B)	(C)	(D)	(E)	(F)	(G)	(H= F/D*100)	(I= F/B*100)
2012	1,326	325,269	245.30	6,118	4.61	4,562	3.44	74.567	1.403
2013	1,631	353,585	216.79	7,789	4.78	6,201	3.80	79.612	1.754
2014	1,767	427,991	242.21	12,663	7.17	8,229	4.66	64.985	1.923
2015	3,227	755,178	234.02	27,913	8.65	13,192	4.09	47.261	1.747
2016	4,396	1,146,939	260.91	45,225	10.29	19,203	4.37	42.461	1.674

주: 연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는 다른 조세특례에 비해 동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자가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사업소득금액 신고자는 375만명으로 2012년 365만명보다 2년간 약 10만명 증가하였음
 - 하지만 2015년 사업소득금액 신고자는 약 410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약 35만 명 증가함

- 2016년에도 사업소득금액 신고자는 약 439만명으로 2015년에 비해 약 30만명 증가함

- 개인사업자의 평균 총공제감면세액은 2014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득세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평균 총공제감면세액은 약 717만원으로 2013년 478만원에 비해 239만원 증가함
 - 이는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고려되던 항목이 2014년부터 과세표준 이후 단계에서 고려되기 때문임
 -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대상에 포함됨

- 2016년 기준으로 동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 중 동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은 약 42.46%를 차지함
 - 한편 주요 공제제도가 소득공제되던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동 제도의 공제세액 비중은 각각 74.57%와 79.61%로 상당히 높았음

- 동 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는 2016년 동 제도를 통해 실효세율을 평균적으로 약 1.67%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로 인하여 평균 실효세율을 가장 크게 감소시킨 2014년에는 약 1.92%포인트의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낮아짐

- 2016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동 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의 전체 활용인원 4,396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3,034명으로 약 70%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종으로 전체 활용인원의 약 10.76%인 473명이 동 조세특례를 신청함
 -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 또한 각각 334명과 254명이 동 제도를 활용해 다른 업종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 4개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제도를 활용한 전체 개인사업자의 93.15%를 차지함

- 동 제도로 인한 평균 공제세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임
 - 해당 업종은 평균적으로 동 제도를 통해 1,837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음
 - 동 제도로 인한 제조업의 평균 공제세액은 그 다음으로 높으며, 공제액은 약 798만원으로 나타남

- 이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동 제도를 통해 실효세율을 약 9.113%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동 제도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은 각각 3.453%포인트, 2.504%포인트, 2.308%포인트로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인 1.674%포인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신고인원 수가 가장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자사의 평균 실효세율은 약 1.441%포인트 감소하여 전체 평균보다 낮음

〈표 II -13〉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업태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E)	금액	(F)	금액	(G)		
$\text{동 특례 비중} = \frac{(H=F/D)*100}{(I=F/B)*100}$																
전체	4,396		1,146,939	260.91	45,225	10.29	19,203	4.37	42,461	1.674						
건설업	30		1,228	40.93	89	2.97	57	1.90	64,045	4.642						
교육 서비스업	22		1,989	90.41	215	9.77	86	3.91	40,000	4.324						
금융 및 보험업	1		129	129.00	5	5.00	4	4.00	80,000	3.101						
도매 및 소매업	334		34,484	103.25	1,654	4.95	796	2.38	48,126	2.3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34		973,041	320.71	33,931	11.18	14,018	4.62	41,313	1.4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8,669	201.60	1,057	24.58	790	18.37	74,740	9.113						
숙박 및 음식점업	473		36,545	77.26	1,673	3.54	915	1.93	54,692	2.50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		7,106	646.00	82	7.45	35	3.18	42,683	0.493						
운수업	9		722	80.22	65	7.22	44	4.89	67,692	6.09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265	265.00	74	74.00	5	5.00	6,757	1.88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7		14,402	134.60	688	6.43	265	2.48	38,517	1.840						
제조업	254		58,738	231.25	5,200	20.47	2,028	7.98	39,000	3.45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745	62.08	44	3.67	21	1.75	47,727	2.81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부원업	3		876	292.00	95	31.67	15	5.00	15,789	1.7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		7,324	135.63	295	5.46	110	2.04	37,288	1.502						

주: 업종 정보가 누락된 관측치가 존재하여 업종별 신고인원 수의 합이 전체 신고인원 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규모별로 동 제도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소득금액 1~5억원 구간에 절반에 가까운 약 49.2%의 사업자가 분포되어 있음
 - 법인과 유사하게 사업소득금액이 높을수록 근로자 1인당 한계수익이 높아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 또한 높아짐
 - 반면, 사업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해당 구간에 속한 사업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동 제도를 활용하는 절대적인 신고인원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동 제도를 활용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5억원 구간에 높은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측정할 경우, 대체로 동 제도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소득금액 3~4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3.829%포인트로 전체 소득 구간 중 가장 큼
 - 한편 3~5억원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1.259%포인트로 1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표 II -14〉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사업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혜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G)	(H=F/D*100)			(I=F/B*100)
			금액	(B)		금액	(D)		금액	(E)						
전체	4,396		1,146,939		260.91	45,225		10.29	19,203		4.37	42.461	1.674			
1,000만원 이하	123		11,880		96.58	266		2.16	127		1.03	47.924	1.071			
1,000만원~2,000만원	169		3,681		21.78	204		1.21	113		0.67	55.297	3.069			
2,000만원~3,000만원	216		6,204		28.72	363		1.68	207		0.96	56.911	3.329			
3,000만원~4,000만원	229		7,950		34.72	502		2.19	304		1.33	60.602	3.829			
4,000만원~5,000만원	188		11,310		60.16	580		3.08	292		1.55	50.374	2.582			
5,000만원~6,000만원	211		12,104		57.37	769		3.64	434		2.06	56.389	3.582			
6,000만원~8,000만원	288		20,533		71.30	1,258		4.37	651		2.26	51.768	3.173			
8,000만원~1억원	287		24,609		85.74	1,633		5.69	740		2.58	45.313	3.007			
1억원~1억 5,000만원	574		68,608		119.53	4,163		7.25	1,643		2.86	39.482	2.395			
1억 5,000만원~2억원	417		69,136		165.79	3,473		8.33	1,170		2.81	33.689	1.692			
2억원~3억원	630		152,042		241.34	6,940		11.02	2,660		4.22	38.329	1.750			
3억원~5억원	542		206,709		381.38	6,982		12.88	2,603		4.80	37.282	1.259			
5억원~10억원	366		245,651		671.18	8,485		23.18	3,909		10.68	46.067	1.591			
10억원 초과	156		306,523		1,964.89	9,607		61.58	4,349		27.88	45.270	1.419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Ⅲ. 효과성 분석



Ⅲ. 효과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함
 - 기업의 고용비용이 절감될수록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세특례의 주된 목적은 신규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것임
 - 하지만 본 조세특례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비용의 일시적 감소가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이 필요함

-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규모는 청년고용과 그 외 일반고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대상집단을 청년집단과 그 외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함
 - 본 조세특례는 청년고용과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100%를 세액공제하고, 그 외 고용증가의 경우 50%를 세액공제함
 - 하지만, 그 외 일반고용집단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분석자료 역시 2016년까지만 이용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성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개별 기업별 고용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상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함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자료는 기업의 연령대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정보를 포함함
 - 한국기업데이터자료는 연간 업종,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를 포함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의 기업정보를 서로 연계한 것임

- 본 연구에서 추정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효과는 본 조세특례뿐만 아니라 고용증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의 효과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정부는 실업률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용증대를 위해 다양한 조세지출제도를 도입 및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여부 및 규모에 차이가 나도록 설계함

1. 선행연구

- 본 절에서는 조세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기여를 설명함
 -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방법 및 결과 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점을 제시함
- 이철인(2006)은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인상은 고용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인상은 (1) 자본의 수익률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와 (2) 기업의 수익성 감소에 따른 규모효과가 나타남
 - 법인세 인상 시 대체효과는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규모효과는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 규모효과는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더 크게 나타남
 - 이론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시 단기적으로는 규모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용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철인(2006)은 실증분석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1997년과 1990년도의 고용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이 두 연도 사이의 법인세 최고 법정한계세율(statutory tax rate)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함
 - 그 외 설명변수로 경제성장률(GDP 변화율), 인구변화율을 사용함
 -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 1% 포인트 상승은 고용의 성장이 0.6% 감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0%의 유의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

- 법인세의 고용효과는 남성 근로자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남성 근로자 집단의 고용효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여성 근로자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
 - 법인세의 고용효과는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이철인(2006)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
 - 표본 수가 64개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조세부담 대리변수로 최고 법정한계세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기업별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함
 - 또한, 일반적인 법인세 인하효과와 조세특례제도에 따른 법인세 인하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조세지출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함
-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은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최근접 짝짓기(Nearest Neighbor Matching)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고용증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은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즉,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이 본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함
 - 본 연구는 2014년 중소기업 기준 변경이라는 외생적 정책환경변화를 토대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처치집단 설정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함
- 심충진·이준규(2011) 및 윤성만·박진하(2015)는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모형(OLS)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세액공제제

도 수혜기업 또는 세액공제규모 증가는 상시종업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충진·이준규(2011)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하였고 윤성만·박진하(2015)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 및 투자증대효과를 추정함
 - 윤성만·박진하(2015)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하지만 이 두 연구 역시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과 유사하게 처치집단 설정에 있어 내생성 문제가 존재함
- 내생성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증대효과는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전병욱·최유진(2015)은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투자유발효과 및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고용규모가 증가함을 보여줌

- 전병욱·최유진(2015)은 중소기업지원세제로 총 8개를 고려함
 - ①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②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④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⑦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⑧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중소기업지원세제별로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직접 관련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설투자 등과 관련된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경우에는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전병욱·최유진(2015)의 연구는 종속변수로 업체당 종사자 수의 자연로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세제 변수의 추정계수가 고용증대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전병욱·최유진(2015)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고용인원의 변화분을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함

- 또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시간불변 설명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의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여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를 최소화함

- 전승훈(2010)은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정책이 고용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정책이 단기적으로 고용증대를 유인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보여줌
 - 전승훈(2010)은 임금과 노동수요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조세정책으로 인해 임금 인하 시 노동수요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줌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136)~(-0.152)로 추정됨
 -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에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0.058)~(-0.065)로 추정되고,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에는 (-0.160)~(-0.180)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0.242)~(-0.271)로 추정됨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전승훈(2010)은 임금보조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중장기정책보다는 단기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을 주장함
 - 다만, 전승훈(2010)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비용 감소가 신규 고용유인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음
 -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수요는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부정적 인식 및 취약한 근로 복지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부족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중소기업자료를 활용한 이층차분 분석을 통해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에게 고용창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함

- 안종범·이영·우석진(2010)은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거시적 시계열자료 및 미시적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 사회보험료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안종범·이영·우석진(2010)은 이론적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소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소는 자본이 노동으로 대체되고 기업의 목표 산출량 증가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실증분석은 자료 및 방법론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
 - 안중범·이영·우석진(2010)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만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안중범·이영·우석진(2010)은 고용증대세제의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나 통제집단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자신의 실적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함
- 본 연구는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1)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기업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고용정보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였고 (2)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의 자신의 실적이 아닌 처치 집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통제집단을 새롭게 설정함
- 오종현·최충(2017)은 회귀단절모형(RDD)을 사용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16년 매출액 3,000억원 주변의 기업에서 청년고용증대효과가 관측되었으나 그 크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회귀단절모형은 처치집단의 설정방법상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다만 단절점 주변의 관측치로 분석표본을 제한하여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작은 표본에 따른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오종현·최충(2017)은 외감기업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자료를 연계하여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5년과 2016년 청년고용증대효과를 각각 추정하였음
 -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bias) 문제를 완화하고 외감기업자료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오종현·최충(2017)의 연구를 발전시킴

2. 분석방법

- 본 조세특례의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방법을 사용함

- 일반적인 이중차분 분석방법은 외생적인 정책 시행 시점 전후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고용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임
- 처치집단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집단이고 통제집단은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임
- 이중차분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책 시행 전에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변화가 유사하였으나 정책 시행 후 처치집단의 고용증대가 통제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가.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한 이중차분 분석(Regression DID)

- 본 연구는 고용증대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고용증가분과 고용변화율을 사용함
 - 본 조세특례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을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2014년 이후 외생적으로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 조세특례의 새로운 수혜대상기업이 된 기업집단이 존재함
 - 2014년 이전에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기준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하였지만, 2014년 이후에는 매출액 규모기준만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함
 - 2014년 이후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어 2014년 이전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함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에게만 세제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일부 기업은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기업으로 새롭게 분류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4년 근처 시점을 분석기간으로 정하여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의 고용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다만, 고용증대 관련 다른 조세특례의 효과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조세특례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다른 조세특례가 존재함

□ 본 연구는 처치연도와 통제연도에 대한 2기간 패널자료를 구축함

- 본 연구는 2014년 이전 기간과 2014년 이후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의 정책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014년과 2013년의 고용증가분을 비교하지 않고 처치연도(2014~2015년 2년간)의 고용증가분과 통제연도(2012~2013년 2년간)의 고용증가분을 비교함
- 여기서 처치연도 고용증가분은 2015년 상시근로자 수에서 2013년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한 것이며, 비교연도 고용증가분은 2013년 상시근로자 수에서 2011년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한 것임
 - 2014년 이후의 경우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2014년에 고용을 증가시킨 후 2015년에 다시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은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고, 2014년에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가 2015년에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이 있을 수 있음
 - 이 두 경우 모두를 고용증대효과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상시근로자 수에서 2013년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고용변화수준을 산출함
 - 2014년 이전의 경우 2015년 이후 종속변수 값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상시근로자 수에서 2011년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고용변화수준을 산출함

□ 본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는 매출액 변화율과 총상시근로자 수입

-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기업의 성장이 빠를수록 고용증가분도 더 클 것으로 예상함
-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고용변화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총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함
-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누적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출액 변화율 역시 2011년 대비 2013년 매출액 변화율과 2013년 대비 2015년 매출액 변화율을 사용함
- 총상시근로자 수의 경우에는 2014년 이전과 이후의 평균치를 사용함

□ 본 연구는 이중차분분석에서 처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1차 차분 추정방법(First-Difference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함

- 기본 회귀방정식은 다음의 식 (III-1)과 같음
 - dY 는 종속변수로 i 기업 t 연도의 청년 및 그 외 일반고용인원 변화분을 의미
 - c 는 상수를 의미
 - TG 는 i 기업 t 연도의 처치집단 기업 더미변수를 의미(처치집단=1)
 - d 는 처치(treatment)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의미(처치연도=1)
 - $TG \cdot d$ 는 처치집단 더미변수와 처치연도 더미변수의 상호작용변수
 - X 는 고용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액 변화율, 총상시근로자 수의 로그 변수를 의미
 - ϵ 는 오차항을 의미

$$dY_{it} = c + TG_i + d_t + \delta(TG_{it} \cdot d_t) + X_{it}\gamma + \epsilon_{it} \quad \text{식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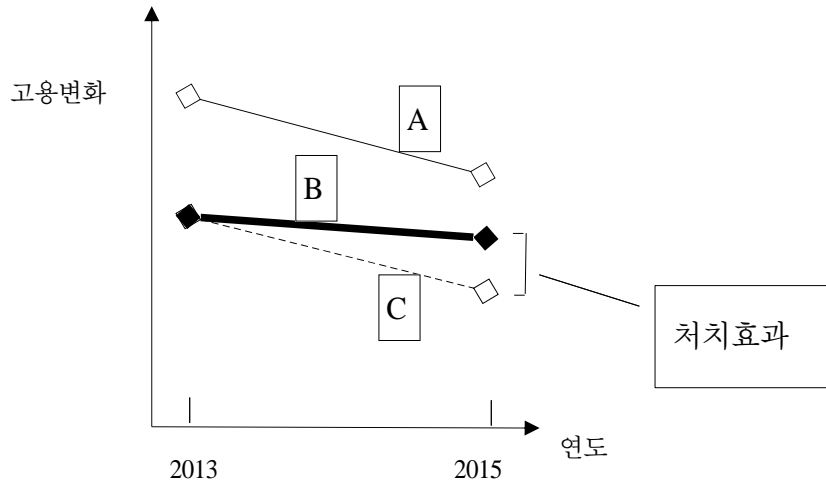
-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 δ 은 식 (III-1)을 1차 차분한 회귀방정식에 OLS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함
 - 식 (III-1)을 1차 차분한 회귀방정식은 식 (III-2)와 같음
 - ξ^* 는 식 (III-2)에서 상수의 역할을 함
 - 본 연구는 2기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처치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1차 차분모형이 아닌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한 경우에도 추정치 δ 가 동일하게 추정됨

$$\begin{aligned} \Delta dY_{it} &= \Delta d_t + \delta \Delta(TG_{it} \cdot d_t) + \Delta X_{it}\gamma + \Delta \epsilon_{it} \\ &= \xi^* + \delta \Delta(TG_{it} \cdot d_t) + \Delta X_{it}\gamma + \Delta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 (III-2)}$$

- 만약 본 조세특례 등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였다면 회귀방정식에서 추정계수 δ 값이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함
 - 추정계수 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처치연도에 처치집단 기업이 통제집단 기업에 비해 고용을 더 증가시켰음을 의미함
 - 이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선분 B와 C의 2015년 고용변화 차이가 추정계수 δ 을 의미함
 - 선분 A는 통제집단의 실제 고용변화 추이

- 선분 C는 중소기업 기준의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처치집단의 가
상적인 고용변화 추이를 의미
- 선분 B는 실제 처치집단의 고용변화 추이

[그림 III-1] 이중차분모형의 처치효과



자료: Angrist and Pischke(2009, p. 231)의 Figure 5.2.1을 본 분석에 맞게 재작성함

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조세지출제도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고용증가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2016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열거된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
 - 2017년부터 정책대상인 중소기업 기준이 열거주의방식이 아닌 포괄주의방식으로 변경되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함
- 이중차분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함
 -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은 2014년에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본 조세특례의 정책대상 기업 범위에도 영향을 줌

- <표 III-1>과 <표 III-2>에 제시된 것처럼 2014년 이전에는 업종에 따라 고용,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정의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정의됨
- 2014년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액 기준 규모가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이전 기준으로는 중견기업 또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으로 중소기업 기준이 제시되어 2014년 중소기업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표 III-1> 2013년 이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 2011. 12. 2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III-2〉 2014년 이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평균 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 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 2015. 6. 30. 개정,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준 개편에 따라 본 조세특례 정책대상으로 새롭게 인정된 기업들은 처치집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통제집단이 됨
 - 본 연구의 처치집단은 2014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집단을 의미함
 - 통제집단은 2014년 이전과 이후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기업으로 전체 기간에 걸쳐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모두 포함됨

- 이중차분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이 유사해야 함
 - 유사한 두 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의 규모기준(단절점)을 활용함
 - 즉, 2013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근처의 기업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함
 - 본 연구는 업종별로 2014년 중소기업 기준 개편 전과 후의 정보를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함

〈표 III-3〉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단위: 명, 억원)

해당 업종	단절점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300	80	-
광업	300	30	-
건설업			
운수업	300	-	3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	-	200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100	-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50	-	5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2013년 중소기업 여부를 구분하는 매출액, 자본금, 또는 고용자 수 기준 단절점으로부터 $\pm 3\%$, 5% , 7% 내에 존재하는 관측치를 이중차분 분석에 사용함
- 처치집단은 2013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으로부터 $+3\%$, 5% , 7% 내에 있어 중소기업에 속하지 못하다가 2014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집단을 의미함
- 통제집단은 2013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으로부터 -3% , 5% , 7% 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과 단절점으로부터 $+3\%$, 5% , 7% 내에 있는 중견기업 혹은 일반기업 중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에 속하지 못한 기업들의 집단을 의미함

2. 분석자료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기업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사용함
 - 한국고용정보원은 2011~2015년 기간에 대한 연도·연령별 개별기업의 고용정보 자료를 제공함
 - 한국기업데이터자료는 기업의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 재무자료를 포함함
 - 한국기업데이터자료에도 고용정보가 존재하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고용정보가 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연령별 고용정보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함
 -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자료에는 기업의 재무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자료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이 두 자료를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자료로 구축함
- 본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제도로 흑자기업이 주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흑자기업임
 - 흑자기업이 아닌 기업은 고용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체 표본을 분석기간 동안 모두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기업으로 제한함
- 본 연구에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사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증감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기업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보존하기 위해 매출액 증감률이 매년 $\pm 30\%$ 를 초과하는 기업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흑자기업들은 2년 동안 $\pm 30\%$ 범위 내에서 고용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 범위 밖에 있는 기업들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이는 전체 표본에서 약 2.8%에 해당하는 수준임
- 2013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근처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므로 이 두 업종을 중심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함
- 단절점 $\pm 3\sim 5\%$ 이내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79%임
 -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기업 수가 10개 미만임
 -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업은 전체 표본에서 업종별로 약 4~5% 차지하는 수준이며, 다른 업종의 기업은 약 0.5~1% 차지하는 수준임

3. 기초통계분석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에 가까운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할수록 처치집단 기업과 통제집단 기업의 유사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표본 수가 작아지는 단점이 존재함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3\%$ 이내 표본 수는 466개이며, 이 중 처치집단은 204개, 통제집단은 262개임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5\%$ 이내 표본 수는 760개이며, 이 중 처치집단은 364개, 통제집단은 396개임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7\%$ 이내 표본 수는 1,036개이며, 이 중 처치집단은 478개, 통제집단은 558개임
 - 전체 표본 중 처치집단 표본은 약 44~48%를 차지함

- 분석대상표본의 총고용인원은 평균적으로 약 39~42명임
 - 청년을 제외한 일반고용 인원은 평균적으로 약 31~33명, 청년고용 인원은 약 8명임
 - 평균적으로 일반고용 증가 인원은 청년고용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일반고용에 대한 평균 증가 인원은 약 3명이며, 청년고용에 대한 평균 증가 인원은 거의 0에 가까움

- 분석대상표본의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약 247~270억원임
 -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9%로 나타남

〈표 III-4〉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단절점으로 부터 ±3% 이내 표본	총고용인원	466	40.37	52.25	1	343.2
	일반고용 인원	466	32.35	40.51	0.583	283.4
	청년고용 인원	466	8.025	14.22	0	122.3
	△일반고용	466	3.007	6.849	-24.83	30
	△청년고용	466	-0.118	4.401	-29.42	29.50
	매출액	466	270.2	566.9	32.69	9,671
	매출액 증가율	466	0.090	0.316	-0.646	1.192
단절점으로 부터 ±5% 이내 표본	총고용인원	760	38.67	48.82	0.500	343.2
	일반고용 인원	760	30.93	37.95	0.500	283.4
	청년고용 인원	760	7.742	13.17	0	122.3
	△일반고용	760	2.723	6.610	-24.83	30
	△청년고용	760	0.056	4.076	-29.42	29.50
	매출액	760	246.5	452.3	32.69	9,671
	매출액 증가율	760	0.086	0.309	-0.646	1.192
단절점으로 부터 ±7% 이내 표본	총고용인원	1,036	41.70	55.08	0.500	352.3
	일반고용 인원	1,036	33.29	43.34	0.500	283.4
	청년고용 인원	1,036	8.405	14.46	0	122.3
	△일반고용	1,036	2.712	6.547	-24.83	30
	△청년고용	1,036	-0.0982	4.197	-29.42	29.50
	매출액	1,036	265.5	501.5	32.69	9,671
	매출액 증가율	1,036	0.084	0.297	-0.646	1.192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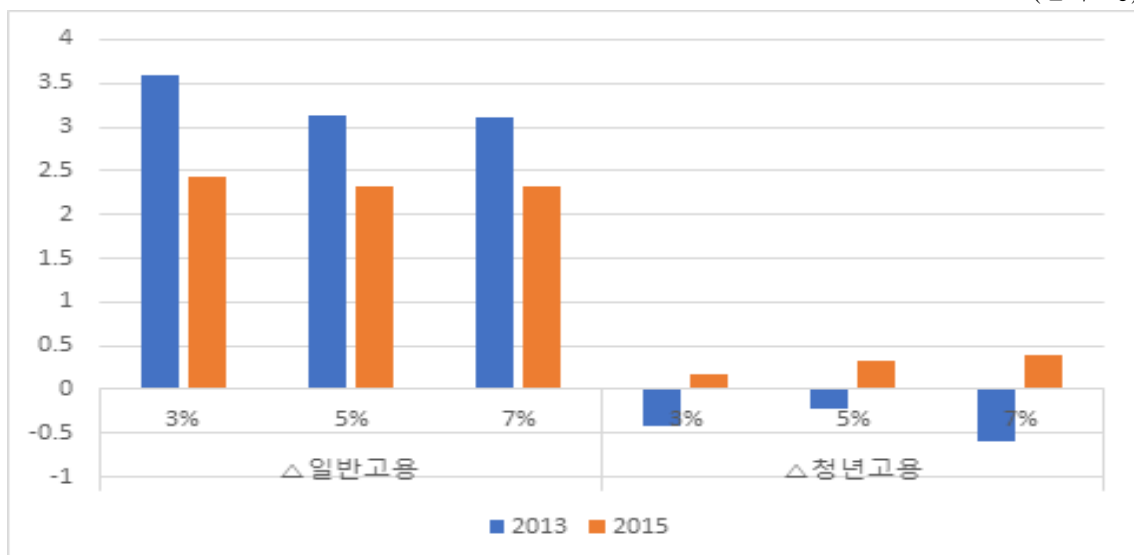
- 2015년 총고용인원은 2013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약 3명 더 늘었음
 - 일반고용 인원은 약 2명 늘었으며, 청년고용 인원은 거의 동일한 수준임
 - 단절점으로부터 ±3% 이내 표본의 경우, 일반고용은 2.4명 늘었고 ±5%와 7% 이내 표본의 경우 2.3명 늘었음
 - 단절점으로부터 ±3% 이내 표본의 경우, 청년고용은 0.2명 늘었고 ±5%와 7% 이내 표본의 경우 각각 0.3명과 0.4명 늘었음

- 2013년 일반고용은 2011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약 3~4명 증가하였고 2015년의 경우에는 2013년과 비교하여 약 2명으로 일반고용 변화 수준은 소폭 감소함
 - 2011년 대비 2013년 일반고용 변화는 표본에 따라 3.1~3.6명이며, 2013년 대비 2015년 일반고용 변화는 2.3~2.4명임

- 2013년 청년고용은 2011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 1명 감소한 수준이며, 2015년의 경우에는 2013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
 - 2011년 대비 2013년 청년고용 변화는 표본에 따라 (-0.6)~(-0.2)명이며, 2013년 대비 2015년 일반고용 변화는 0.1~0.4명임

[그림 III-2] 연도별 평균 고용 변화

(단위: 명)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2013은 2011년 대비 2013년 고용증가 인원

3. 2015는 2013년 대비 2015년 고용증가 인원

자료: 저자 작성

- 처치집단의 평균 일반고용 인원과 청년고용 인원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다소 낮지만, 일반고용 및 청년고용의 증가 인원 수는 평균적으로 두 집단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남
 - 분석대상표본에서 처치집단의 총고용인원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8명 더 크게 나타남
 - 일반고용의 경우 처치집단의 고용인원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5~9명이 더 많고 청년고용의 경우 1~2명 더 많음
 - 일반고용의 경우 평균 증가 인원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약 3명이고, 청년고용의 경우 0에 가까움

- 처치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매출액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두 집단이 서로 유사함
 - 처치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약 58~80억원 더 낮음
 - 하지만 평균 매출액 변화율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약 9%로 동일하게 나타남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업규모 및 고용인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013년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규모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자본금 규모 기준, 매출액 규모기준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됨
 - 즉, 상시근로자 수가 적지만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높거나, 상시근로자 수는 많지만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낮을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또한 통제집단에는 2013년 이전과 이후 모두 중견기업 혹은 일반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집단의 기업규모가 처치집단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고용인원 수 역시 더 많게 나타날 수 있음

<표 III-5>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처치집단	총고용인원	204	33.81	41.31	1	318.3
	일반고용	204	27.26	33.14	0.833	236.8
	청년고용	204	6.554	9.984	0	81.50
	△일반고용	204	2.512	6.410	-22.33	28
	△청년고용	204	-0.195	3.879	-17.17	14.75
	매출액	204	225.4	125.5	41.79	824.9
	매출액 증가율	204	0.090	0.334	-0.646	1.143
통제집단	총고용인원	262	45.48	58.96	1	343.2
	일반고용	262	36.31	45.10	0.583	283.4
	청년고용	262	9.170	16.72	0	122.3
	△일반고용	262	3.392	7.161	-24.83	30
	△청년고용	262	-0.058	4.775	-29.42	29.50
	매출액	262	305.2	746.7	32.69	9,671
	매출액 증가율	262	0.090	0.302	-0.530	1.192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III-6>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처치집단	총고용인원	364	35.08	41.33	1	332.8
	일반고용	364	28.36	33.86	0.833	268.2
	청년고용	364	6.728	9.440	0	81.50
	△일반고용	364	2.547	6.221	-22.33	28
	△청년고용	364	0.072	3.676	-17.17	14.75
	매출액	364	216.5	118.4	41.79	1,078
	매출액 증가율	364	0.078	0.312	-0.646	1.143
통제집단	총고용인원	396	41.97	54.66	0.500	343.2
	일반고용	396	33.30	41.26	0.500	283.4
	청년고용	396	8.674	15.80	0	122.3
	△일반고용	396	2.884	6.953	-24.83	30
	△청년고용	396	0.042	4.416	-29.42	29.50
	매출액	396	274.0	615.3	32.69	9,671
	매출액 증가율	396	0.094	0.307	-0.554	1.192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표 III-7>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

(단위: 개, 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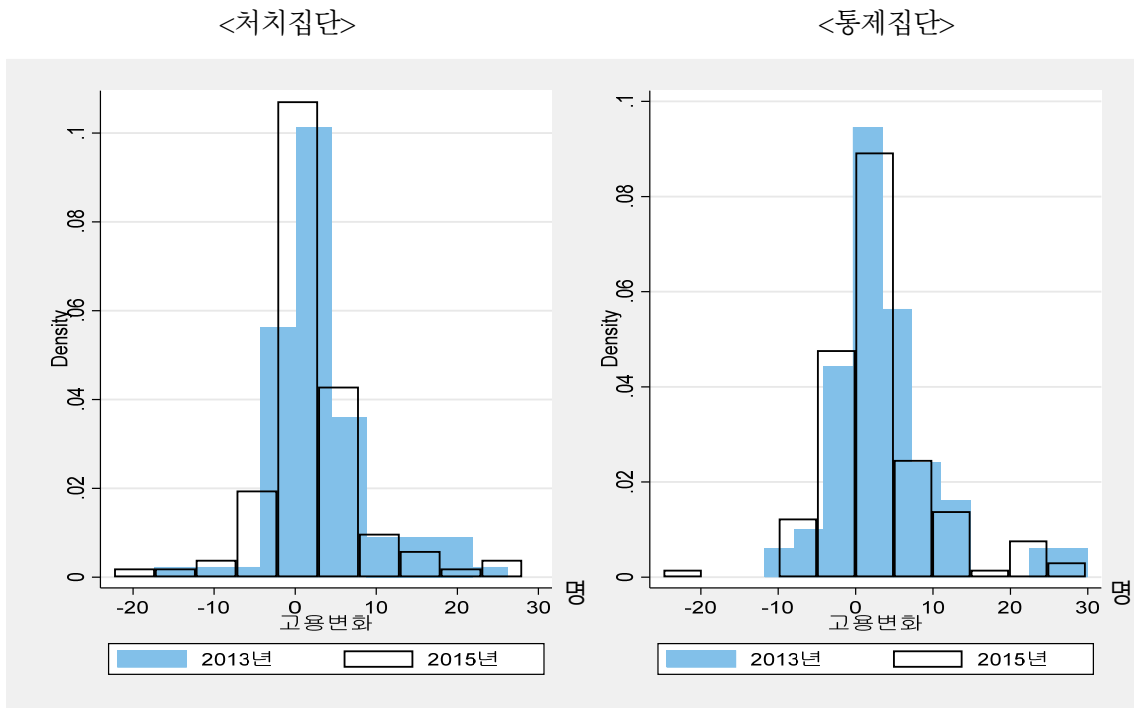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처치집단	총고용인원	478	37.65	41.71	1	332.8
	일반고용	478	30.41	34.31	0.833	268.2
	청년고용	478	7.244	9.776	0	81.50
	△일반고용	478	2.820	6.286	-22.33	29.83
	△청년고용	478	-0.030	3.663	-17.17	17.83
	매출액	478	222.1	140.4	35.67	1,375
	매출액 증가율	478	0.082	0.300	-0.646	1.143
통제집단	총고용인원	558	45.16	64.21	0.500	352.3
	일반고용	558	35.76	49.68	0.500	283.4
	청년고용	558	9.399	17.44	0	122.3
	△일반고용	558	2.620	6.767	-24.83	30
	△청년고용	558	-0.157	4.608	-29.42	29.50
	매출액	558	302.7	668.9	32.69	9,671
	매출액 증가율	558	0.086	0.295	-0.638	1.192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 일반 및 청년고용 변화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정책환경이 고용증대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지만, 처치집단의 고용 변화 수준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최소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 변화 분포는 2014년 전과 후에 크게 변하지 않음
 - 일반고용 변화에 대한 분포의 경우, 표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통제연도와 비교하여 처치연도에 처치집단의 일반고용 변화 분포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좌측으로 조금 더 이동한 것으로 보임
 - 청년고용 변화에 대한 분포의 경우, 대체로 통제연도와 비교하여 처치연도에 통제집단의 청년고용 변화 분포가 처치집단보다 우측으로 조금 더 이동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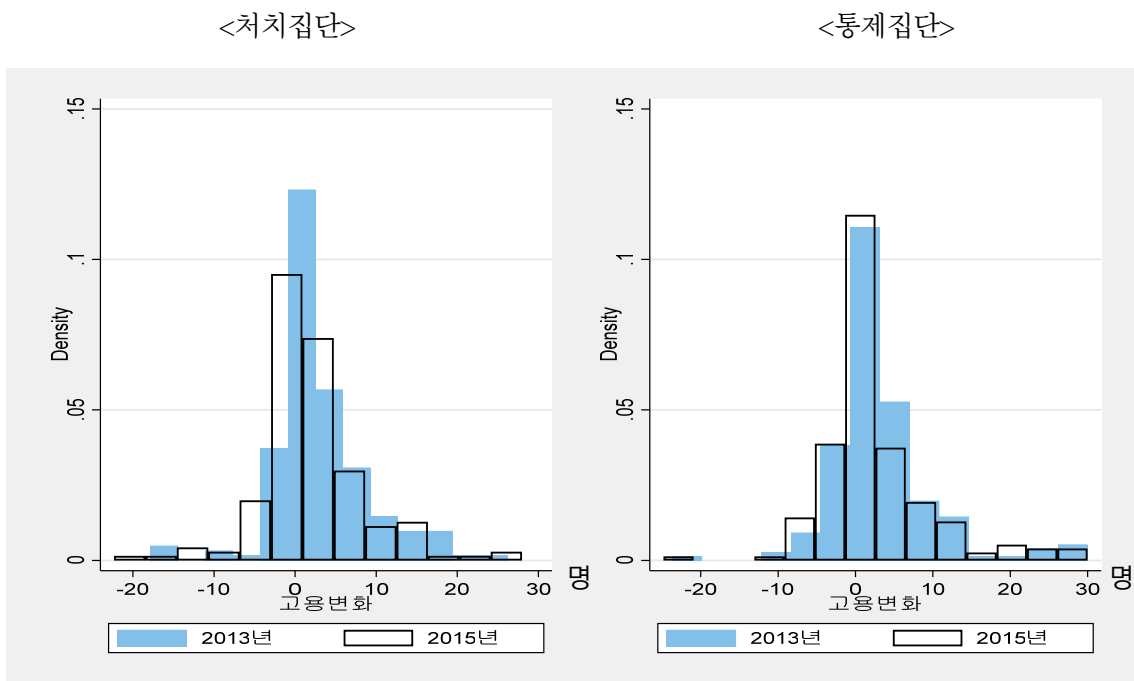
- 하지만 이는 다른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 변화 수준만을 비교한 것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III-3]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3\%$ 이내 관측치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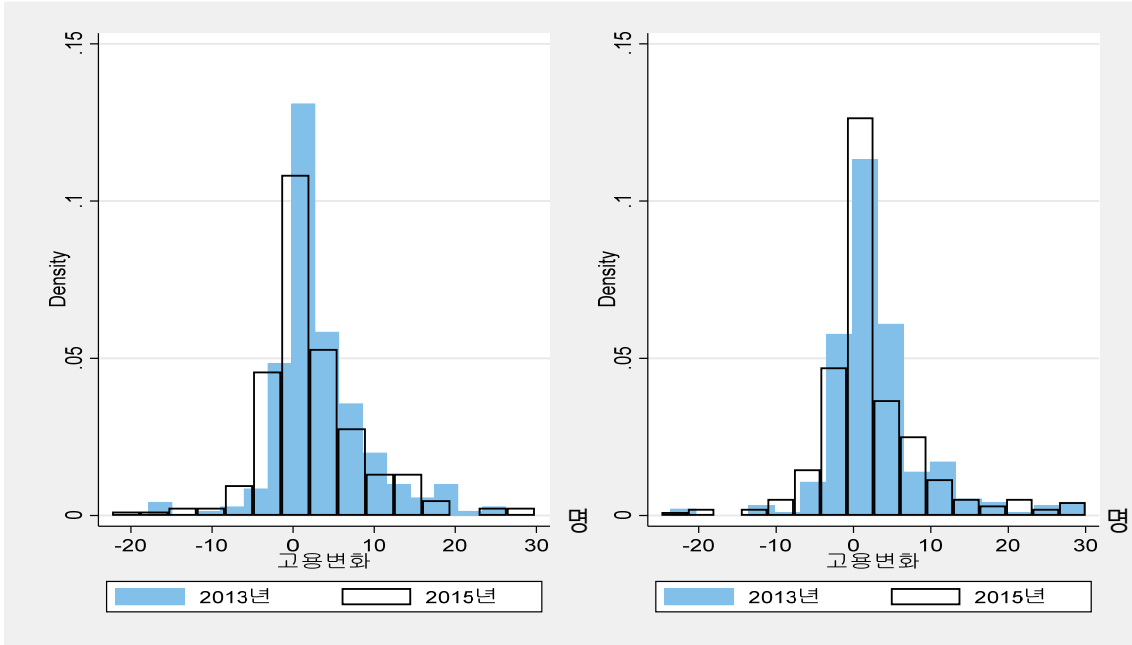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

<처치집단>

<통제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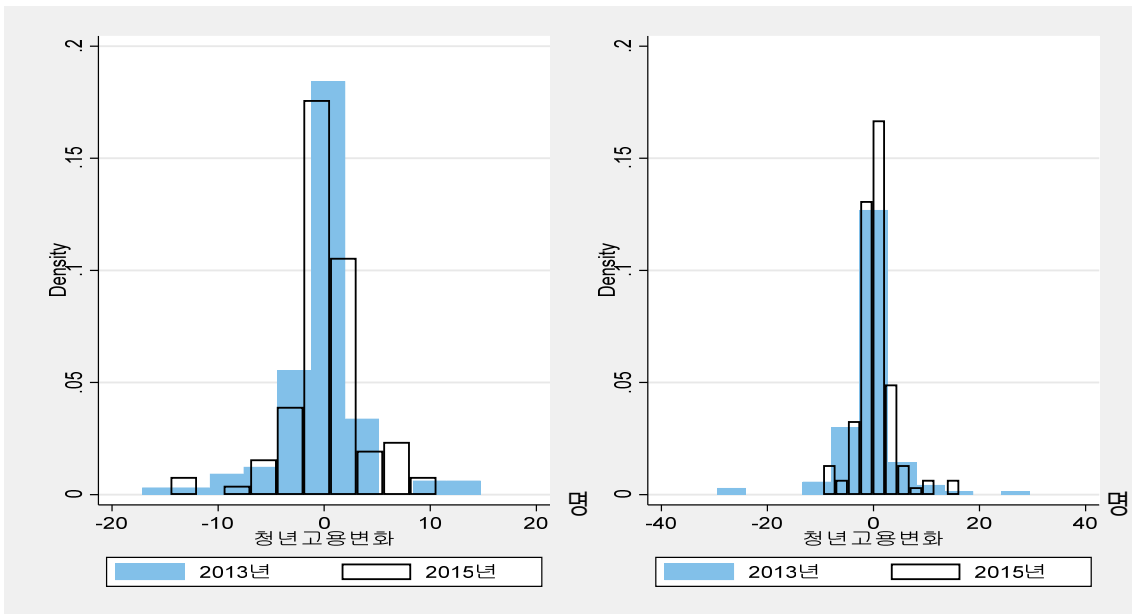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3\%$ 이내 관측치

<처치집단>

<통제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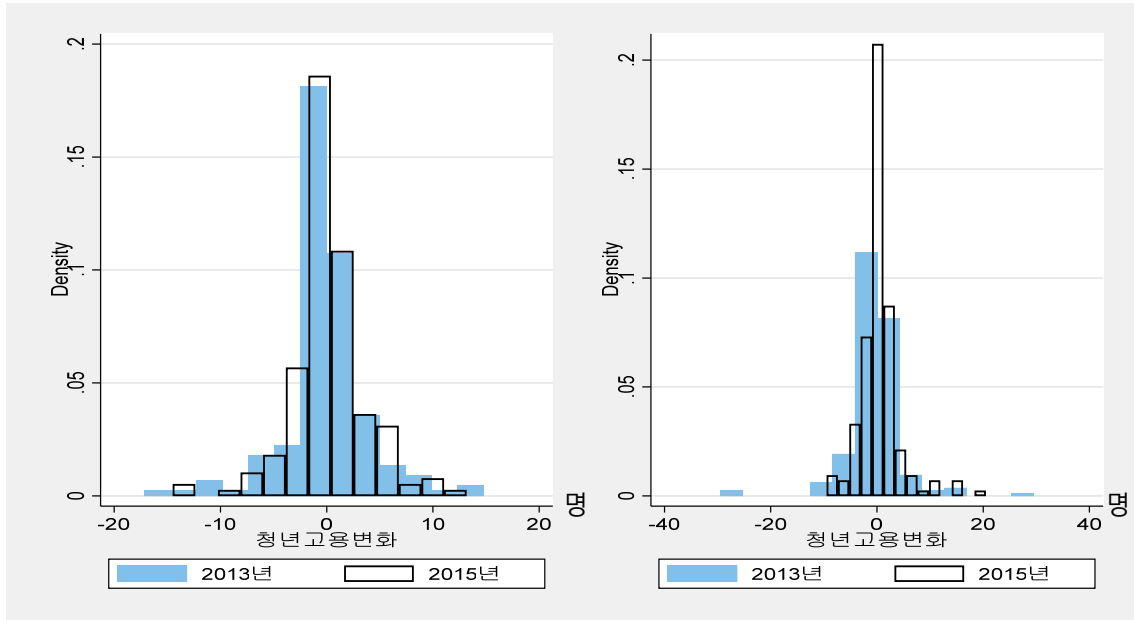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

<처치집단>

<통제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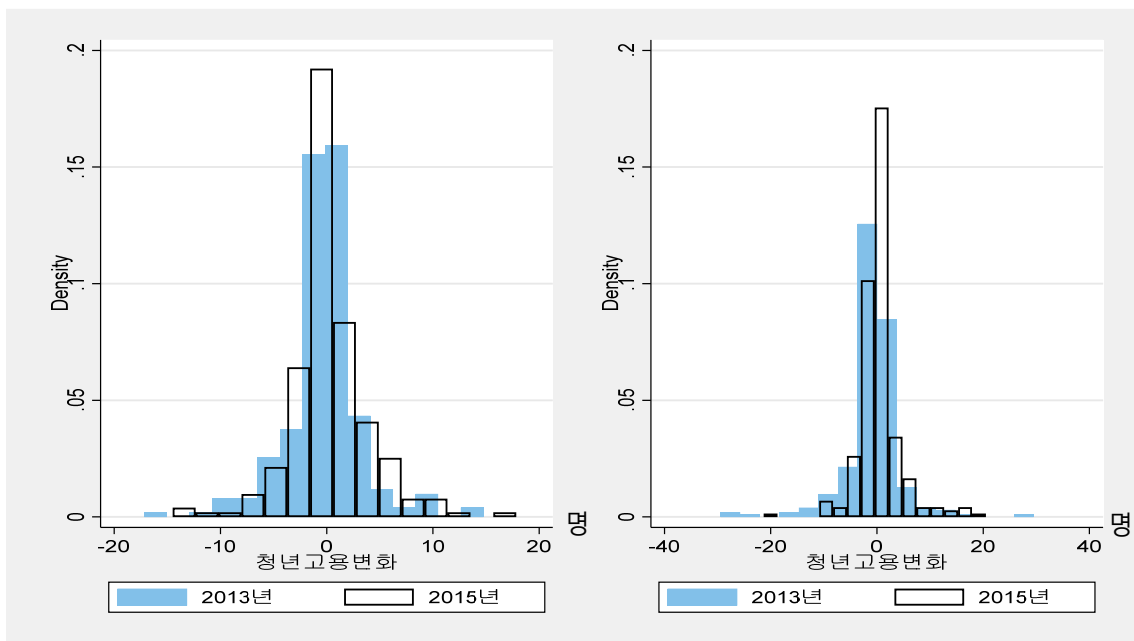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8]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

<처치집단>

<통제집단>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4. 회귀분석

- <표 III-8>은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표 III-9>~<표 III-11>은 업종별 부분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임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3\%$, 5% , 7% 이내 표본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됨
 - <표 III-8>~<표 III-11>의 홀수열은 일반고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며 짝수열은 청년고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임

- <표 III-8>에 제시된 결과는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를 보여주지 못함
 -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었다면, [처치집단 \times 처치연도]의 추정계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함
 -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처치집단 \times 처치연도]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음(-)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 추정계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지만, 표본선정 반경에 상관없이 추정계수가 절대값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며, 이는 대체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 변화 수준이 2014년 전과 후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일반고용에 대한 [처치집단 \times 처치연도]의 추정계수는 표본선정 반경 범위에 따라 $(-0.96)\sim(-0.20)$ 으로 나타남
 - 청년고용에 대한 [처치집단 \times 처치연도]의 추정계수는 표본선정 반경 범위에 따라 $(-0.18)\sim(-0.5)$ 으로 나타남

- 매출액 변화율은 일반고용 및 청년고용의 변화와 양(+)의 관계를 가짐
 - 기업의 성장이 빠를수록 고용증가 역시 높게 나타남
 - 다만,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의 경우, 모형 (2)에서 매출액 증가율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평균 총근로자 수는 일반고용 변화와 양(+)의 관계를 가지지만, 청년고용 변화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서는 총근로자 수의 증가는 일반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고 청년고용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대체로 총근로자 수와 청년고용 변화 간의 음(-)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처치연도 더미변수를 보면, 처치연도의 일반고용은 통제연도에 비해 약 1명 정도 감소하였지만 청년고용은 약 1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고용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처치연도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약 -1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 변화의 경우에는 약 1로 나타남

<표 III-8>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5) DID	(6) DID
종속변수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전체 표본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처치집단 ×처치연도	-0.956 (1.114)	-0.181 (0.797)	-0.297 (0.793)	-0.589 (0.576)	-0.203 (0.678)	-0.437 (0.513)
매출액 증가율	3.074*** (1.086)	1.781 (1.108)	2.104*** (0.791)	2.098*** (0.773)	2.406*** (0.759)	2.249*** (0.671)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5.283** (2.193)	-2.029* (1.225)	4.912*** (1.668)	-0.188 (0.940)	5.665*** (1.461)	-0.166 (0.794)
처치연도 더미변수	-1.035 (0.836)	1.031* (0.572)	-0.942 (0.615)	1.039** (0.420)	-0.990* (0.530)	1.394*** (0.397)
Observations	233	233	380	380	518	518
R-squared	0.051	0.024	0.039	0.029	0.048	0.026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 <표 III-9>~<표 III-11>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처치집단×처치연도]의 추정계수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며 그 크기는 표본선정 반경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짐

○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의 경우, 모형 (1)과 (2)에서 처치연도 처치집단의 일반고용 변화 수준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약 2명 정도 더 감소시킨 정도이며, 청년고용 변화 수준은 약 1명 정도 더 감소시킨 정도임

-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의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의 경우, 모형 (1)과 (2)에서는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추정계수 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표 III-9>~<표 III-11>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일반고용에 대한 [처치집단×처치연도]의 추정계수는 표본선정 반경에 상관없이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짐
 - 청년고용에 대한 [처치집단×처치연도]의 추정계수는 표본선정 반경 3% 이내인 경우 모형 (4)에서만 양(+)의 부호를 가지고 나머지 모형의 경우에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짐

<표 III-9>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종속변수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전체 표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처치집단 ×처치연도	-2.384 (1.839)	-0.797 (1.618)	0.689 (1.516)	0.548 (1.069)
매출액 증가율	1.826 (1.913)	2.288 (2.419)	3.535*** (1.272)	1.174 (0.969)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12.639*** (3.522)	-0.191 (2.078)	0.817 (2.429)	-3.342** (1.386)
처치연도 더미변수	-1.355 (0.993)	1.113* (0.572)	-1.385 (1.420)	0.607 (1.136)
Observations	114	114	119	119
R-squared	0.126	0.022	0.040	0.045

주: 1. Δ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의 경우, 모형 (3)과 (4)에서 처치연도 처치집단의 일반고용 변화 수준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약 1명 정도 더 증가시킨 정도이며, 청년고용 변화 수준은 약 1명 더 증가시킨 정도임
-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의 경우, 모형 (3)과 (4)에서는 2015년 처치집단의 일반고용 변화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약 1명 정도 더 증가시킨 정도이며, 청년고용은 거의 변화가 없음
-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의 경우, 모형 (3)과 (4)에서는 2015년 처치집단의 일반고용 변화 수준은 통제집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추정계수 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II-10>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종속변수	Δ 일반고용 인원	Δ 청년고용 인원	Δ 일반고용 인원	Δ 청년고용 인원
전체 표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처치집단 \times 처치연도	-1.525 (1.383)	-0.852 (1.049)	0.805 (0.958)	-0.278 (0.740)
매출액 증가율	1.524 (1.678)	2.475 (1.766)	2.537*** (0.808)	1.773** (0.753)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10.847*** (3.225)	1.474 (1.858)	1.639 (1.573)	-1.083 (1.000)
처치연도 더미변수	-1.050 (0.846)	1.080** (0.501)	-1.083 (0.892)	0.814 (0.732)
Observations	178	178	202	202
R-squared	0.081	0.030	0.038	0.030

주: 1. Δ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표 III-11>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인원	△청년고용 인원	△일반고용 인원	△청년고용 인원
전체 표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처치집단 ×처치연도	-0.480 (1.172)	-0.343 (0.919)	0.130 (0.757)	-0.388 (0.555)
매출액 증가율	2.271 (1.489)	2.194 (1.487)	2.487*** (0.770)	2.045*** (0.625)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13.410*** (3.227)	2.491 (1.738)	2.148* (1.252)	-1.398* (0.786)
처치연도 더미변수	-1.709** (0.813)	1.425** (0.610)	-0.748 (0.678)	1.155** (0.518)
Observations	245	245	273	273
R-squared	0.096	0.020	0.037	0.045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 종속변수를 일반 및 청년고용 변화분 대신 고용변화율을 사용하여 다시 처치효과(δ)를 추정하더라도 결과는 앞선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처치연도 처치집단의 일반 및 청년고용증가율은 통제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모든 모형에서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추정치 δ는 0에 가깝고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II-12>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5) DID	(6)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전체 표본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처치집단 ×처치연도	-0.023 (0.060)	-0.068 (0.088)	-0.003 (0.040)	-0.117* (0.069)	0.002 (0.034)	-0.077 (0.058)
매출액 증가율	0.215*** (0.068)	0.240** (0.103)	0.222*** (0.050)	0.251*** (0.085)	0.201*** (0.043)	0.171** (0.077)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0.044 (0.142)	-0.391** (0.153)	0.172 (0.117)	-0.097 (0.154)	0.161 (0.110)	-0.116 (0.125)
처치연도 더미변수	-0.059* (0.033)	0.178*** (0.061)	-0.072*** (0.026)	0.165*** (0.049)	-0.078*** (0.022)	0.170*** (0.040)
Observations	233	233	380	380	518	518
R-squared	0.044	0.047	0.067	0.036	0.055	0.017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표 III-13>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표본선정 반경 3% 이내 표본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전체 표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처치집단 ×처치연도	0.007 (0.049)	-0.217 (0.142)	-0.038 (0.096)	0.062 (0.109)
매출액 증가율	0.111* (0.061)	0.347* (0.180)	0.286** (0.114)	0.150 (0.115)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0.206 (0.142)	-0.431* (0.259)	-0.030 (0.208)	-0.415** (0.190)
처치연도 더미변수	-0.082** (0.035)	0.231** (0.095)	-0.037 (0.060)	0.098 (0.072)
Observations	114	114	119	119
R-squared	0.051	0.061	0.052	0.057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표 III-14>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일반고용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전체 표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처치집단 ×처치연도	0.014 (0.040)	-0.136 (0.110)	-0.019 (0.064)	-0.105 (0.090)
매출액 증가율	0.118** (0.058)	0.313** (0.152)	0.290*** (0.075)	0.217** (0.104)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0.168 (0.120)	-0.105 (0.318)	0.174 (0.165)	-0.093 (0.167)
처치연도 더미변수	-0.077*** (0.028)	0.164** (0.076)	-0.050 (0.046)	0.159** (0.063)
Observations	178	178	202	202
R-squared	0.045	0.037	0.080	0.032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표 III-15> 업종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인원	△청년고용 인원	△일반고용 인원	△청년고용 인원
전체 표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처치집단 ×처치연도	0.029 (0.033)	-0.127 (0.088)	-0.016 (0.056)	-0.028 (0.077)
매출액 증가율	0.120** (0.049)	0.157 (0.138)	0.243*** (0.065)	0.172* (0.092)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0.210* (0.112)	-0.041 (0.277)	0.141 (0.150)	-0.157 (0.134)
처치연도 더미변수	-0.080*** (0.023)	0.197*** (0.065)	-0.075* (0.039)	0.137*** (0.050)
Observations	245	245	273	273
R-squared	0.059	0.016	0.056	0.020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 개편에 의해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견되지 않음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2014년 이전에는 중견기업이 아니었으나 2014년 중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2014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함
 - 2014년 새롭게 중소기업이 된 기업은 본 조세특례로 인해 고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2014년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가 고용증대유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강건성 분석

가. 기초통계분석

- 본 연구는 오종현·최충(2017)이 사용한 처치집단 설정방법을 사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재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증대효과를 다시 추정함
 - 오종현·최충(2017)은 2014년 변경된 중소 및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함
 - 2014년 이후 적용되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총 5개의 산업군으로 구분됨 (<표 III-3> 참조)
 - 매출액 기준 단절점은 산업군에 따라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임
- 본 연구는 각 산업군별로 매출액을 기준 단절점으로부터 $\pm 5\%$, 7% , 10% 이내 표본을 분석에 사용함
 -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는 기업표본은 2011~2015년 기간 동안 본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임

- 이런 이유로 단절점으로부터 $\pm 3\%$ 이내 표본 수가 분석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표본선정 반경 범위를 앞선 분석의 경우보다 확대함
 - 표본선정 반경 범위는 오중현·최충(2017)의 연구와 동일하게 설정함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5\%$ 이내 표본 수는 146개이며, 이 중 처치집단은 68개, 통제집단은 78개임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7\%$ 이내 표본 수는 200개이며, 이 중 처치집단은 104개, 통제집단은 96개임
 -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pm 10\%$ 이내 표본 수는 310개이며, 이 중 처치집단은 168개, 통제집단은 142개임
 - 전체 표본 중 처치집단 표본은 약 46~54%를 차지함
- 강건성 분석대상표본의 총고용인원은 평균적으로 약 147~152명임
- 2014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단절점 근처에 있는 표본으로 앞선 분석의 경우보다 고용인원이 많음
 - 2014년 중소기업 기준은 기존의 경우보다 더 확대된 것임
 - 청년을 제외한 일반고용 인원은 평균적으로 약 113~116명, 청년고용 인원은 약 34~37명임
 - 평균적으로 일반고용증가 인원은 청년고용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일반고용에 대한 평균 증가 인원은 약 10~12명이며, 청년고용에 대한 평균 증가 인원은 거의 0에 가까움
- 분석대상표본의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약 938~996억원임
-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16%로 나타남

<표 III-16>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단절점으로부터 ±5% 이내 표본	총고용인원	146	152.3	102.1	7.750	586
	일반고용 인원	146	115.8	73.53	5.333	327.9
	청년고용 인원	146	36.50	43.30	0	263.8
	△일반고용	146	11.76	13.46	-42.58	44.92
	△청년고용	146	0.352	11.28	-33.83	40.83
	매출액(억원)	146	996.0	294.5	333.6	2,001
	매출액 증가율	146	0.126	0.227	-0.240	1.181
단절점으로부터 ±7% 이내 표본	총고용인원	200	150.8	100.2	7.750	586
	일반고용 인원	200	113.5	71.22	5.333	327.9
	청년고용 인원	200	37.30	43.55	0	263.8
	△일반고용	200	10.13	15.02	-42.58	44.92
	△청년고용	200	0.180	11.18	-33.83	40.83
	매출액(억원)	200	979.6	294.0	239.3	2,001
	매출액 증가율	200	0.135	0.234	-0.240	1.235
단절점으로부터 ±10% 이내 표본	총고용인원	310	147.1	139.7	1	1,435
	일반고용 인원	310	113.1	111.2	1	1,175
	청년고용 인원	310	34.05	40.87	0	263.8
	△일반고용	310	9.776	15.27	-43.33	44.92
	△청년고용	310	0.093	11.03	-81.17	40.83
	매출액(억원)	310	938.4	297.1	239.3	2,001
	매출액 증가율	310	0.160	0.259	-0.244	1.248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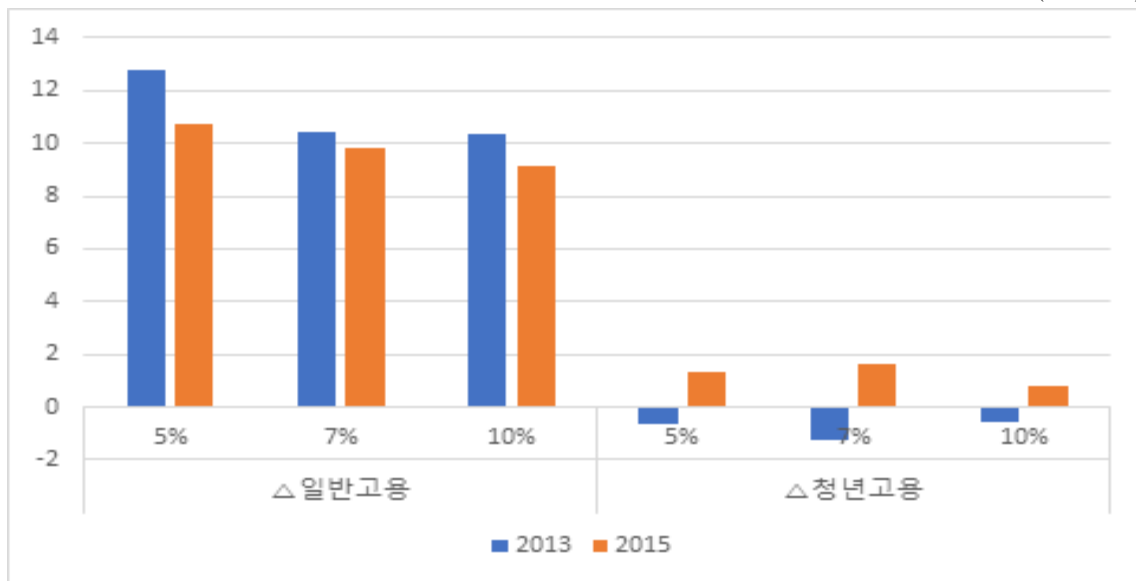
- 2015년 총고용인원은 2013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약 11명 늘었음
 - 일반고용 인원은 약 10명 늘었으며, 청년고용 인원은 약 1명 늘었음
 - 단절점으로부터 ±5%, 7%, 10% 이내 표본의 경우, 일반고용은 각각 10.8명, 9.8명, 9.2명 늘었음
 - 단절점으로부터 ±5%, 7%, 10% 이내 표본의 경우, 청년고용은 1.36명, 1.65명, 0.77명 늘었음

- 2013년 일반고용은 2011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2015년의 경우에는 2013년과 비교하여 감소함
 - 2011년 대비 2013년 일반고용 변화는 표본에 따라 10.39~12.78명이며, 2013년 대비 2015년 일반고용 변화는 9.16~10.74명임

- 2013년 청년고용은 2011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고, 2015년의 경우에는 2013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함
 - 2011년 대비 2013년 청년고용 변화는 표본에 따라 (-0.58)~(-1.29)명이며, 2013년 대비 2015년 일반고용 변화는 0.77~1.65명임

[그림 III-9] 연도별 평균 고용 변화(강건성 분석)

(단위: 명)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2013은 2011년 대비 2013년 고용증가 인원
 3. 2015는 2013년 대비 2015년 고용증가 인원

자료: 저자 작성

- 처치집단의 평균 일반고용 인원과 청년고용 인원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다소 낮지만, 일반고용 및 청년고용의 증가 인원 수는 평균적으로 두 집단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남
 - 분석대상표본에서 처치집단의 총고용인원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8명 더 크게 나타남

- 일반고용의 경우 처치집단의 고용인원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5~9명이 더 많고 청년고용의 경우 1~2명 더 많음
 - 일반고용의 경우 평균 증가 인원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약 3명이고, 청년고용의 경우 0에 가까움
- 처치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통제집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두 집단이 서로 유사함
- 처치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약 58~80억원 더 낮음
 - 하지만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약 9%로 동일하게 나타남
- 표본선정 반경 범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통제집단이 처치집단보다 총고용인원, 일반고용, 청년고용, 매출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고용 변화 및 매출액 증가율은 유사함
- 주요 변수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표본선정 반경 $\pm 10\%$ 이내 표본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일반적으로 표본선정 반경 범위가 단절점 근처에 있을수록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가장 유사할 수 있으나, 표본 수가 작을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표본선정 반경 범위에 상관없이 처치집단의 청년고용 변화는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이 특징적임
 - 표본선정 반경 범위에 따라 처치집단은 평균적으로 0.4~1.8명이고, 통제집단은 (-0.30)~(-0.93)명임

<표 III-17>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처치집단	총고용인원	68	140.8	73.32	23.33	359.8
	일반고용	68	108.1	59.91	17.42	247.9
	청년고용	68	32.63	30.32	0	131.3
	△일반고용	68	11.00	11.84	-11.92	41.83
	△청년고용	68	1.819	10.97	-29.33	40.83
	매출액	68	907.4	269.6	350.9	1,491
	매출액 증가율	68	0.131	0.242	-0.240	1.181
통제집단	총고용인원	78	162.3	121.4	7.750	586
	일반고용	78	122.5	83.43	5.333	327.9
	청년고용	78	39.86	52.03	1.583	263.8
	△일반고용	78	12.42	14.78	-42.58	44.92
	△청년고용	78	-0.927	11.46	-33.83	38.25
	매출액	78	1,073	295.2	333.6	2,001
	매출액 증가율	78	0.123	0.214	-0.237	0.840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III-18>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처치집단	총고용인원	104	142.1	78.29	20.42	359.8
	일반고용	104	108.2	61.32	16.83	269.2
	청년고용	104	33.93	34.53	0	188.8
	△일반고용	104	9.334	13.99	-37.83	41.83
	△청년고용	104	1.078	10.95	-29.33	40.83
	매출액	104	910.5	255.0	239.3	1,491
	매출액 증가율	104	0.140	0.250	-0.240	1.235
통제집단	총고용인원	96	160.2	119.2	7.750	586
	일반고용	96	119.3	80.53	5.333	327.9
	청년고용	96	40.95	51.53	0.917	263.8
	△일반고용	96	10.99	16.08	-42.58	44.92
	△청년고용	96	-0.793	11.39	-33.83	38.25
	매출액	96	1,054	315.7	333.6	2,001
	매출액 증가율	96	0.130	0.216	-0.237	0.840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III-19>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강건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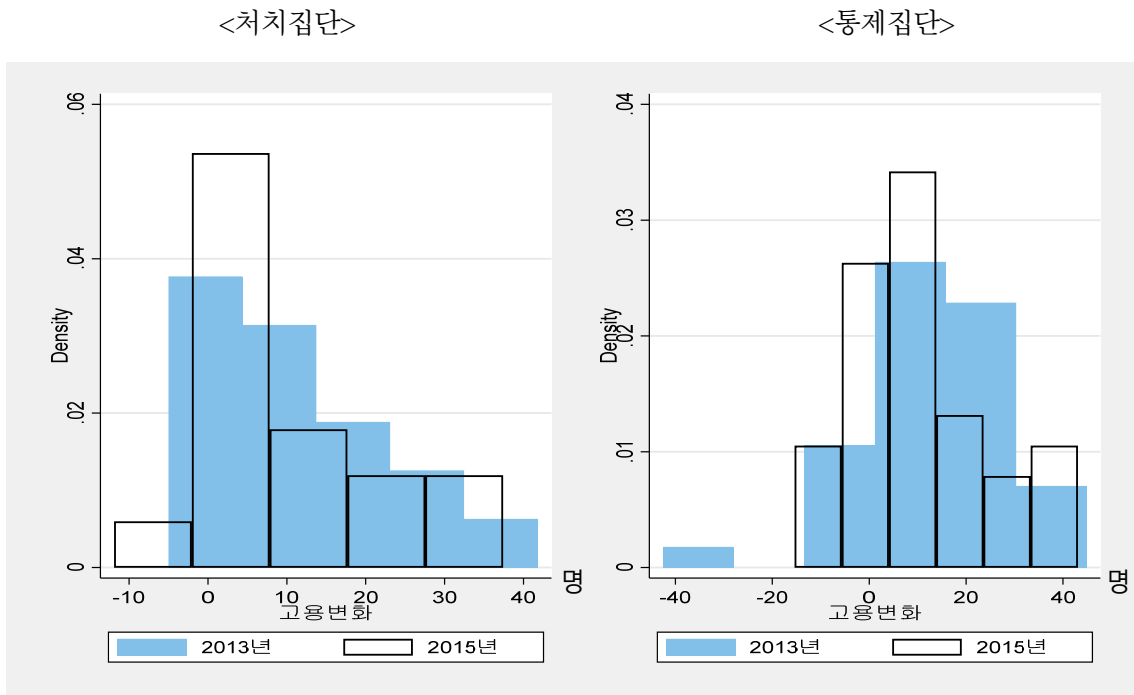
(단위: 개, 명, 억원)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처치집단	총고용인원	168	143.4	157.9	9.083	1,435
	일반고용	168	112.3	131.7	8.750	1,175
	청년고용	168	31.04	36.71	0	260.7
	△일반고용	168	8.778	14.86	-43.33	41.83
	△청년고용	168	0.420	11.49	-81.17	40.83
	매출액	168	882.5	262.8	239.3	1,593
	매출액 증가율	168	0.160	0.270	-0.244	1.248
통제집단	총고용인원	142	151.6	114.7	1	586
	일반고용	142	114.0	81.10	1	327.9
	청년고용	142	37.63	45.16	0	263.8
	△일반고용	142	10.96	15.71	-42.58	44.92
	△청년고용	142	-0.295	10.48	-33.83	38.25
	매출액	142	1,004	321.7	255.1	2,001
	매출액 증가율	142	0.160	0.245	-0.237	1.002

주: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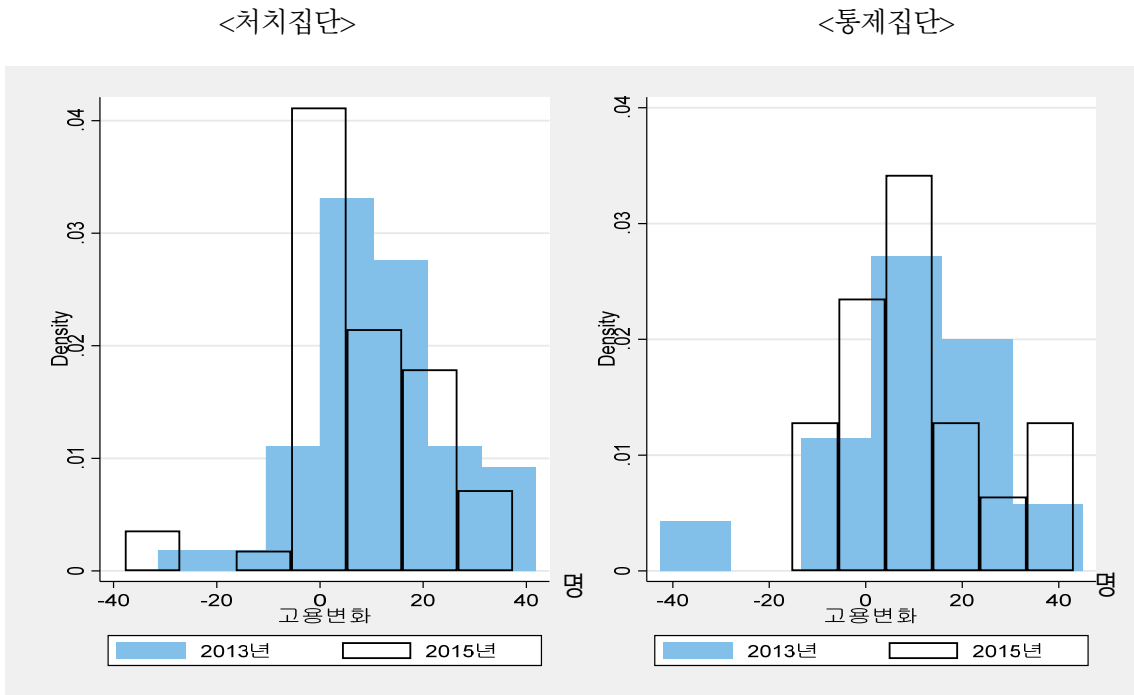
- 일반 및 청년고용 변화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앞선 기초통계분석과 마찬가지로 처치집단의 고용 변화 수준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최소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2014년 전과 후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 변화 분포는 큰 변화가 없음
 - 일반고용 변화의 분포는 청년고용 변화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용 변화가 0보다 큰 영역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일반고용 변화에 대한 분포의 경우, 표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15년 처치집단의 분포는 2013년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좌측으로 소폭 이동하였으며 통제집단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
 - 청년고용 변화에 대한 분포의 경우, 2015년 처치 및 통제집단 분포는 2013년과 비교하여 소폭의 움직임은 있으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I-10]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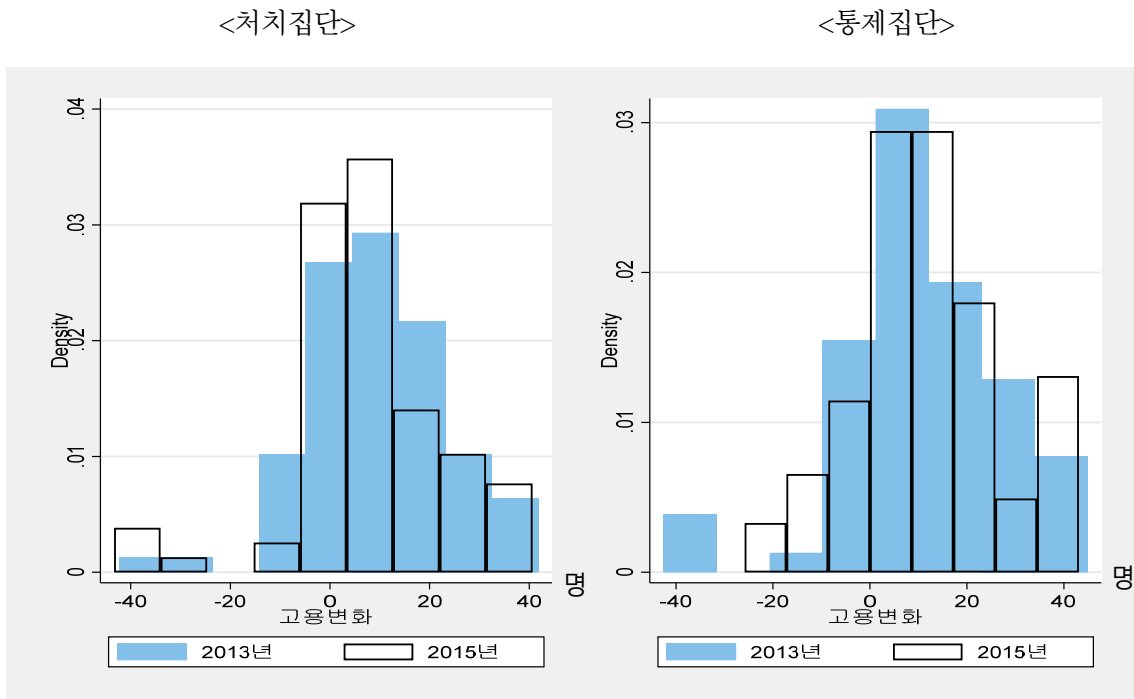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년도, 2015년은 치치년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1]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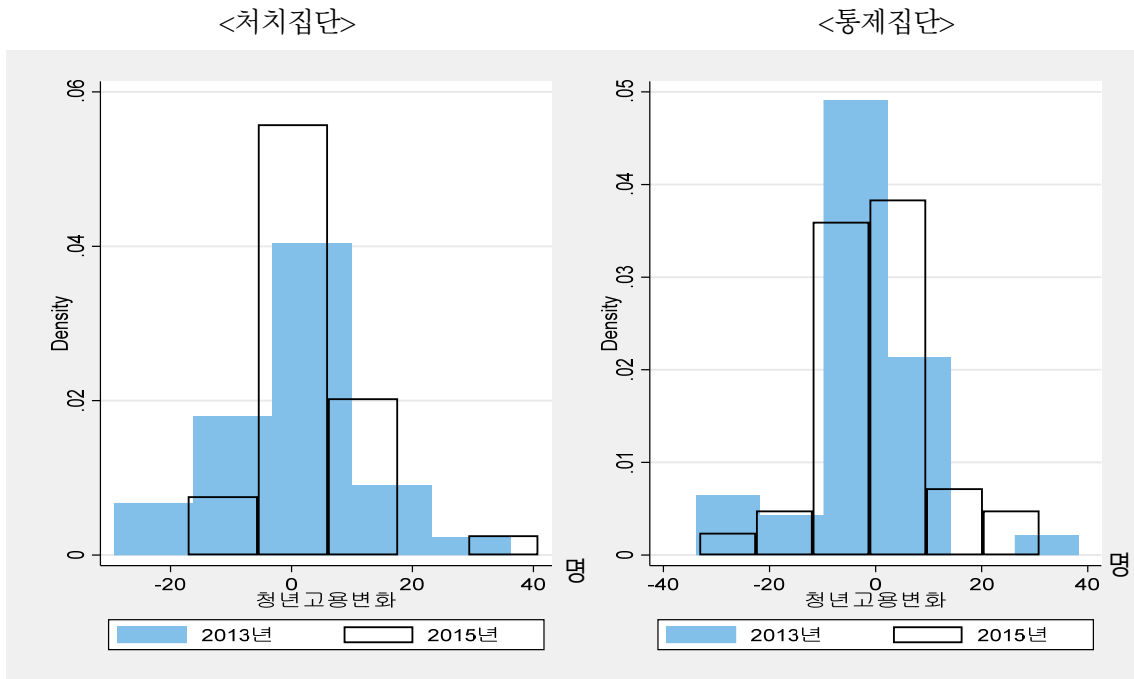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년도, 2015년은 치치년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2] 일반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10\%$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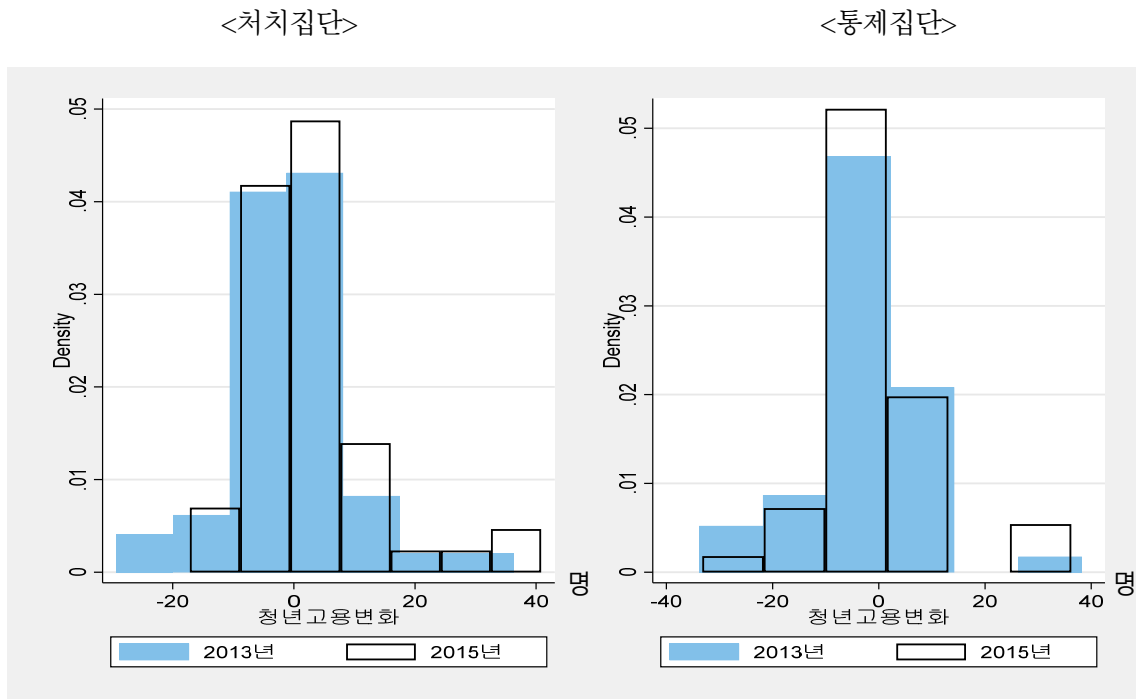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3]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5\%$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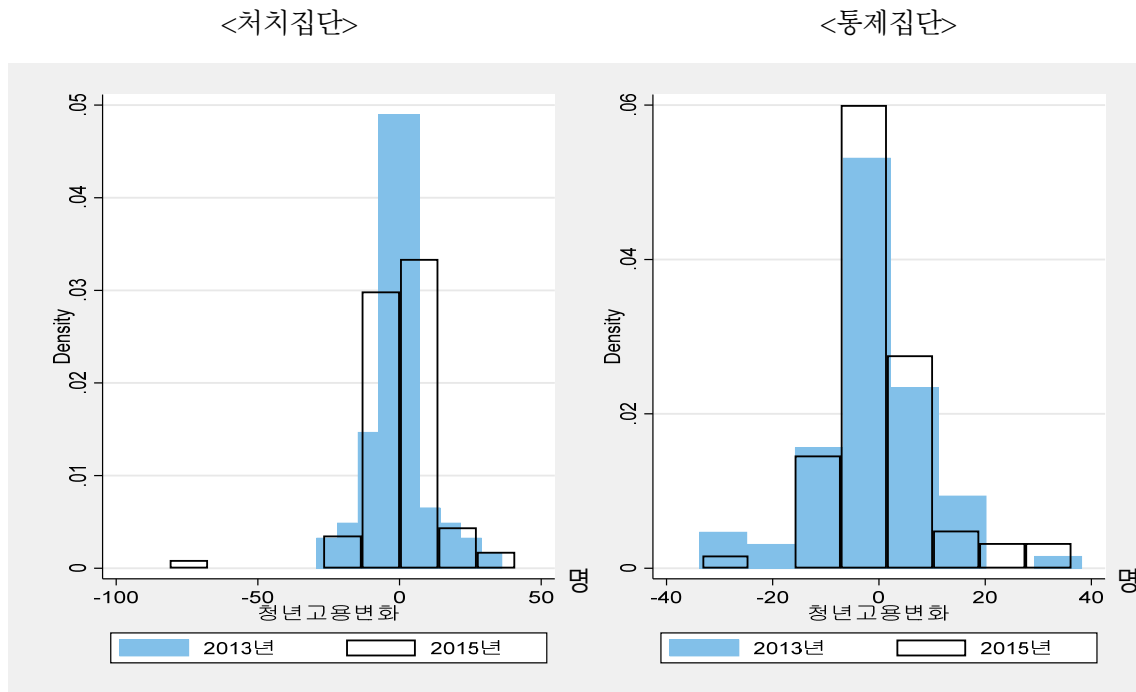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4]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7\%$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5] 청년고용 변화 분포: 표본선정 반경 $\pm 10\%$ 이내 관측치(강건성 분석)



주: 2013년은 통제연도, 2015년은 처치연도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나. 회귀분석

- 강건성 분석 결과는 <표 III-20>과 <표 III-21>에 제시됨
 - <표 III-20>은 고용 변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줌
 - <표 III-21>은 고용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줌
 -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각 표의 (1)과 (2)열에 제시되고, 7% 이내의 경우 (3)과 (4)열에, 10% 이내의 경우 (5)와 (6)열에 제시됨
 - 각 표에서 홀수열은 일반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짝수열은 청년고용 증대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임

-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중소기업 기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중소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 본 조세특례로 인한 고용증대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표 III-20>과 <표 III-21>에 제시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증대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표 III-20>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II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5) DID	(6) DID
종속변수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일반 고용	△청년 고용
추정방법	FD	FD	FD	FD	FD	FD
전체 표본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	
처치집단 ×처치연도	-1.641 (3.051)	0.818 (3.676)	-5.028 (3.105)	1.352 (3.271)	-2.808 (2.619)	-0.408 (2.670)
매출액 증가율	2.814 (7.305)	17.708** (8.302)	0.585 (6.353)	18.496** (7.652)	3.961 (5.644)	16.122*** (5.216)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10.655 (10.782)	8.337 (6.962)	9.849 (9.362)	3.014 (6.485)	13.719*** (5.188)	0.661 (4.878)
처치연도 터미변수	-2.355 (2.800)	1.836 (3.073)	0.897 (2.760)	2.761 (2.723)	-1.201 (2.311)	2.289 (1.990)
Observations	73	73	100	100	155	155
R-squared	0.019	0.069	0.033	0.069	0.041	0.057

- 주: 1.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 <표 III-20>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고용의 경우, 처치년도 처치집단의 고용변화는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의 경우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I-21>의 결과를 보면 처치년도 처치집단의 일반 및 청년고용 변화율은 통제집단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δ)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됨
- 모든 모형의 처치효과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됨

<표 III-21>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IV

모형	(1) DID	(2) DID	(3) DID	(4) DID	(5) DID	(6) DID
종속변수	일반고용 변화율	청년고용 변화율	일반고용 변화율	청년고용 변화율	일반고용 변화율	청년고용 변화율
추정방법	FD	FD	FD	FD	FD	FD
전체 표본	표본선정 반경 5% 이내		표본선정 반경 7% 이내		표본선정 반경 10% 이내	
처치집단 × 처치연도	0.002 (0.044)	0.049 (0.096)	-0.039 (0.038)	0.077 (0.077)	-0.011 (0.034)	0.046 (0.069)
매출액 증가율	0.023 (0.105)	0.391* (0.217)	-0.032 (0.088)	0.312* (0.188)	0.057 (0.059)	0.448*** (0.163)
Log of [평균 총근로자 수]	-0.245 (0.231)	0.186 (0.210)	-0.205 (0.186)	0.248 (0.226)	0.193 (0.226)	-0.224 (0.200)
처치연도 더미변수	0.005 (0.045)	0.014 (0.059)	0.022 (0.038)	-0.017 (0.052)	-0.063 (0.044)	0.052 (0.045)
Observations	73	73	100	100	155	155
R-squared	0.044	0.063	0.043	0.051	0.040	0.084

주: 1. Δ 은 t기의 고용인원에서 t-2기의 고용인원을 차감한 것임
 2. 괄호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6. 소결

- 이철인(2006)은 법인세 인하로 (1)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반면 (2) 기업의 수익성 증가로 자본 및 노동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법인세 감면혜택은 (1) 대체효과와 (2) 규모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철인(2006)은 단기적으로는 규모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고 판단함

- 안중범 외(2010)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정해지면 비용극소화를 통해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용비용이 감소할 경우 자본이 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줌

- 하지만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이 필요함
 -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증가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용비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임
 - 본 조세특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것은 맞지만 정규직의 경우 한 번 고용하면 지속적으로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함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전 또는 이후 중소기업 기준 단절점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중소기업 기준 변화로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세특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중소기업 기준 변화에 따른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표본선정 범위 밖에 있는 기업의 경우 본 조세특례의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본 조세특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 중 일부는 본 조세특례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을 감소한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의 매력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7. 본 연구의 한계

- 주된 회귀분석에서 정의된 통제집단은 2014년 전과 후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중소기업의 고용 변화 패턴이 2014년과 2015년에 일정하지 않고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용증대효과는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본 조세특례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 전과 후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통제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에서 2014년 전과 후에 고용 변화 패턴이 일정하다면 큰 문제가 없음
 - 하지만 다른 이유로 2014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통제집단의 고용 변화 패턴이 바뀌었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용증대효과는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고용증대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 주의가 필요함
 -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가 존재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용증대효과는 본 조세특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임금지원의 적절성

-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다음과 같은 악순환에 빠져있음을 근거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임금을 지원하는 본 조세특례가 타당함을 주장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짐
 -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이 나타남
 - 이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임금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은 위의 악순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악순환의 시발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 제조업의 경우 1999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4.5% 수준이었음
 - 이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2014년 거의 절반 수준인 52.5%까지 하락하였음
 - 2015년부터 해당 비율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7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약 5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표 IV-1> 기업규모별 임금 총액(제조업)

(단위: 원, %)

연도	임금수준			증가율	
	대기업(A)	중소기업(B)	B/A×100	대기업	중소기업
1999	1,885,355	1,216,280	64.5	-	-
2000	2,075,889	1,349,948	65.0	10.1	11.0
2001	2,188,563	1,441,643	65.9	5.4	6.8
2002	2,536,271	1,576,954	62.2	15.9	9.4
2003	2,798,678	1,704,447	60.9	10.3	8.1
2004	3,209,064	1,836,605	57.2	14.7	7.8
2005	3,458,375	1,991,852	57.6	7.8	8.5
2006	3,535,748	2,118,294	59.9	2.2	6.3
2007	3,864,492	2,255,027	58.4	9.3	6.5
2008	4,027,929	2,232,337	55.4	4.2	-1.0
2009	4,031,703	2,321,320	57.6	0.1	4.0
2010	4,546,940	2,492,489	54.8	12.8	7.4
2011	4,663,782	2,466,159	52.9	2.6	-1.1
2012	4,923,384	2,620,491	53.2	5.6	6.3
2013	5,178,326	2,738,788	52.9	5.2	4.5
2014	5,470,006	2,871,236	52.5	5.6	4.8
2015	5,574,075	3,013,173	54.1	1.9	4.9
2016	5,802,683	3,160,173	54.5	4.1	4.9
2017	5,899,644	3,290,247	55.8	1.7	4.1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 동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2.8%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1%보다 높은 상황임
 - 특히, 2017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은 약 12.88%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4.82%보다 8.05%포인트 가량 높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대기업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단위: 명, %)

연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현원	부족 인원	부족률	현원	부족 인원	부족률
2009	6,477,751	203,257	3.1	1,610,609	20,895	1.3
2010	6,458,539	248,003	3.8	1,865,237	29,884	1.6
2011	6,954,921	243,832	3.5	1,776,497	23,830	1.3
2012	7,254,925	250,279	3.4	1,811,935	23,501	1.3
2013	7,789,736	254,625	3.3	2,007,452	23,278	1.2
2014	8,637,976	241,419	2.8	2,071,390	21,157	1.0
2015	8,804,693	239,750	2.7	2,146,541	20,109	0.9
2016	8,786,245	263,926	3.0	2,246,397	24,269	1.1
2017	9,288,241	257,424	2.8	2,364,109	25,365	1.1

주: 자료는 반기별 평균 자료임
 자료: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표 IV-3> 기업규모별 미충원 인원 추이

(단위: 명, %)

연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인 인원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구인 인원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2009	744,577	146,307	19.65	145,568	12,222	8.40
2010	941,617	195,752	20.79	235,224	18,234	7.75
2011	963,194	223,682	23.22	199,904	15,370	7.69
2012	973,580	170,589	17.52	193,095	11,472	5.94
2013	1,059,035	169,733	16.03	226,575	12,794	5.65
2014	1,236,308	161,306	13.05	241,687	11,509	4.76
2015	1,235,053	147,910	11.98	259,187	9,899	3.82
2016	1,251,614	168,390	13.45	271,374	11,827	4.36
2017	1,272,084	163,893	12.88	299,078	14,430	4.82

자료: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인 것으로 파악됨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에 대한 첫 번째 사유로 300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인력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보다는 근로자의 자격조건이 미달하였거나 다른 기업과의 인력 경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4〉 사업체 규모별 미충원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9.0	9.9	5.8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 유치 경쟁 때문	13.9	11.6	22.7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18.3	20.2	10.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21.2	22.3	17.0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5.9	14.4	21.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7.0	16.2	19.9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4.6	5.3	2.1
기타	0.1	0.2	0.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2017. 10, p. 15.

-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큰 상황이며, 그 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음
 - 2001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8.7% 수준이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28.8% 수준까지 하락함
 -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소폭 축소되어 2015년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32.4%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표 IV-5>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비교(제조업)

(단위: 2010 기준가격 백만원, %)

연도	노동생산성 수준			증가율	
	대기업(A)	중소기업(B)	B/A×100	대기업	중소기업
2000	171.2	65.1	38.0	-	-
2001	175.0	67.6	38.7	2.2	3.9
2002	202.1	72.1	35.7	15.5	6.7
2003	206.2	76.8	37.3	2.0	6.5
2004	239.0	81.8	34.2	15.9	6.5
2005	240.1	87.3	36.4	0.4	6.7
2006	254.9	93.1	36.5	6.2	6.6
2007	285.7	95.9	33.6	12.1	3.0
2008	325.2	104.5	32.1	13.8	9.0
2009	314.7	102.6	32.6	-3.2	-1.8
2010	358.4	103.3	28.8	13.9	0.6
2011	366.4	106.6	29.1	2.2	3.2
2012	358.3	106.5	29.7	-2.2	0.0
2013	355.2	105.3	29.7	-0.9	-1.1
2014	336.3	110.9	33.0	-5.3	5.3
2015	343.1	111.2	32.4	2.0	0.2

주: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불변부가가치임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7 제조업 업종별·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2017. 12, p. 12.

-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임금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실패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임금인상 시 사회보험료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임
 - 이에 동 조세특례를 통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제도를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에 비해 한계기업이 아닌 성장성이 비교적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함
 - 동 제도의 수혜대상 기업은 고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조세지출 특성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순이익 기업이기 때문에 한계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존재함

- 중소기업 인력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 등 노동공급자를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 상황임
 - 동 조세특례는 위와 같은 역할에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동 조세특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만으로는 기업에 고용된 전체 인력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뒤에서 청년실업률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높은 청년실업률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존재함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의 양적인 고용증가만을 지원하는 한계가 존재함

나. 소규모 기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 지원의 적절성

-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율은 각각 69.6, 71.7, 72.0% 수준임
 - 반면, 5인 이상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 이상임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보험(99.7%)과 국민연금(98.7%)에 가입함

<표 IV-6> 2017년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89.1	88.9	89.1	97.6
5인 미만	69.6	71.7	72.0	91.0
5~29인	93.4	91.0	91.0	99.1
30~299인	97.5	96.5	96.2	99.9
300인 이상	95.6	99.7	98.7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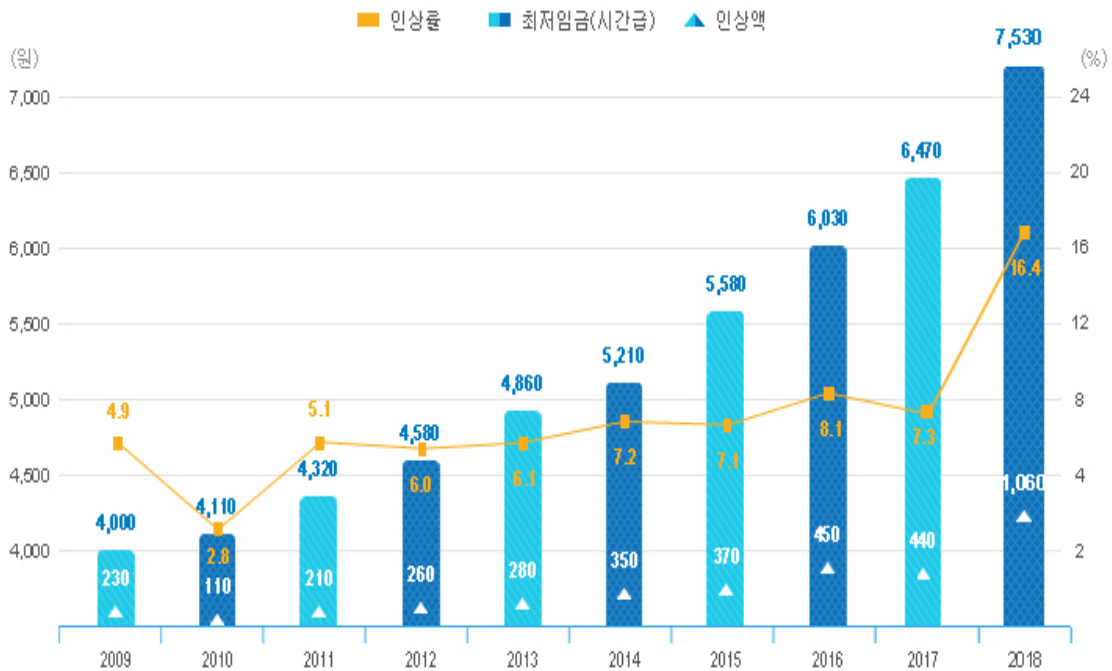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통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laborstat.moel.go.kr/>

- 이처럼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계층으로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나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해당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최저임금 증가

- 2018년 정부는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함
 - 2018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8.1%였음
 - 과거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고려하면 2018년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임

[그림 IV-1]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 이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임
 - 최저임금은 주로 대기업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동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경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험료는 임금과 비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고용증가 인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중 일부가 경감되는 효과가 존재함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사회보험료 산정방법의 적절성

- 현행 제도는 연평균 총급여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함으로써 기업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추정하지만, 이 방법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과 본 조세특례에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사회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합으로 결정됨

- 기업이 실제 사회보험료 납부 시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과 본 세액공제 적용 시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경감 또는 면제받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본 조세특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국외근무자는 건강보험료율의 50%만 적용함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월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데, 본 조세특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과세기간 중에 사회보험료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고용보험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로 보험료율이 변경된 사례가 존재함

- 이에 다음의 식 (IV-1)~(IV-2)와 같이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음의 식에서 청년 등(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 식 (II-1)과 식 (II-2)에 의해 계산함
- 현행 제도는 사회보험료 대신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을 아래의 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한 뒤 평균 급여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상당액을 계산함

$$\text{청년 등 사회보험료 상당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총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V-1)}$$

$$\text{청년 등 외 사회보험료 상당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총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quad \text{식 (IV-2)}$$

- 다만 식 (IV-1)과 식 (IV-2)를 통해 실제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산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사회보험료 정산절차로 인하여 기업이 과세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귀속분과 다름
 - 과세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다음 해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결정됨
 - 문제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으로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등 법인세 신고·납부 시 까지 귀속연도의 사회보험료가 정산되지 않음
 - 사회보험료의 정산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해당 연도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발생함
- 이에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와 같이 사회보험료 산정 시 필요한 기준소득을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한 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사회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사회보험료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과 동 조세특례에서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사회보험료율을 정밀하게 적용할 경우 제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 등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가령,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 (IV-3)과 같이 사회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음
 - 이는 각 사회보험에 적용된 총급여액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임

$$\begin{aligned}
 & \text{(건강보험료율} \times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중 건강보험} \\
 & \quad \text{적용 대상 총급여액 합계)} \\
 & + \text{(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times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중} \\
 & \quad \text{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 합계)} \\
 & + \text{(국민연금보험료율} \times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
 & \quad \text{국민연금보험 적용 대상 총급여액 합계)} \\
 & + \text{(고용보험료율} \times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보험} \\
 & \quad \text{적용 대상 총급여액 합계)} \\
 & + \text{(산재보험료율} \times \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산재보험} \\
 & \quad \text{적용 대상 총급여액 합계)} \\
 \text{청년 등 외 사회보험료율} &= \frac{\hspace{15em}}{\text{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합계}}
 \end{aligned}
 \tag{IV-3}$$

- 하지만, 이는 제도를 복잡하게 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비해 이에 따른 세수실적 증가 등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식 (IV-3)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상시근로자 개개인별로 특정 사회보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함
 - 과세당국 또한 기업에 속한 근로자 개개인에 적용된 사회보험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비해 동 조세특례를 신청하는 기업 근로자의 연령분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위와 같은 제도설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세특례 신청 기업 근로자의 연령분포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

- 사회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임
 - 동 제도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이직 및 퇴직자들이 발생하여 고용증가 인원이 신규 채용 인원보다 적을 수 있고, 이에 고용증가 인원에 해당되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는 대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과 그 외 계층을 구분하여 해당 계층의 평균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신규 채용 인원이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자라면 식 (IV-3)과 같이 계산된 사회보험료율은 오히려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율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현행 제도가 실제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와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차선책으로써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의 적절성

- 동 조세특례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세제혜택을 우대하여 적용함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분은 전액 세액공제함
 - 반면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50% 혹은 75%(신성장 서비스업)를 세액공제함

- 이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시장에서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 진작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실업률이 높음
- 30~44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음
 - 해당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구체적으로 실업률 등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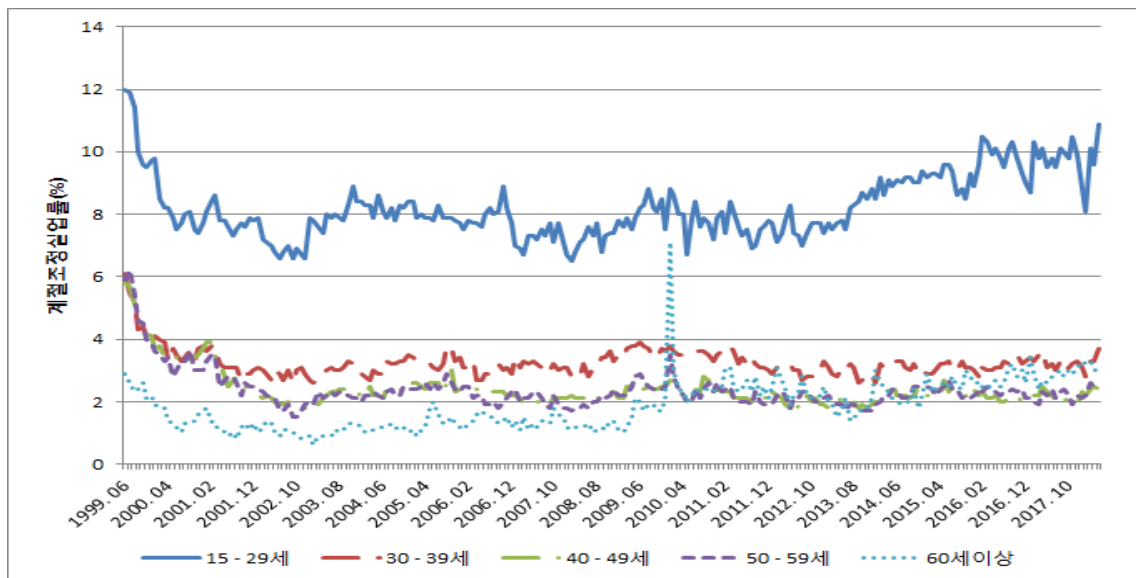
□ 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10%를 초과하였음

- 청년실업률은 2013년 7월 이후 매월 8%를 넘어선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처음으로 10%를 초과하였음
-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실업률의 하락은 관찰되지 않음
- 특히,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의 청년실업률은 10.9%를 기록함

□ 반면, 30세 이상 계층의 실업률은 4% 이하로 회복하는 모습임

-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의 연령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30대는 3.7%로 40세 이상보다 높으나, 청년실업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임

[그림 IV-2] 연령대별 계절조정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같은 기간 4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각각 2.4%와 2.5%로 유사한 수준이며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
- 동 기간 60대 이상 실업률은 2.8%임

□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남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으로 정의되나, 해당 정의에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못하여 실업률이 과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는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됨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단시간 근로자 등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함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잠재구직자와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포기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육아, 입원 등으로 당장은 취업이 어려운 잠재취업가능자를 의미함
- 이에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의 비율로 정의됨
 - 이에 고용보조지표1과 실업률의 차이가 크다면 비정규직 등 불안정하게 고용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많아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인 확장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중으로 정의됨
 - 고용보조지표2에서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고려하지 않음
 - 이에 고용보조지표2와 실업률의 차이가 크다면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가능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보조지표3은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2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됨

- 가장 광의의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을 살펴보면, 2015~2017년 동안 확장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직장을 구하였더라도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에 대한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 고용보조지표3의 약 절반 수준임
 - 이는 전체 연령 계층에서 청년 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임을 보여줌

- 이에 청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현재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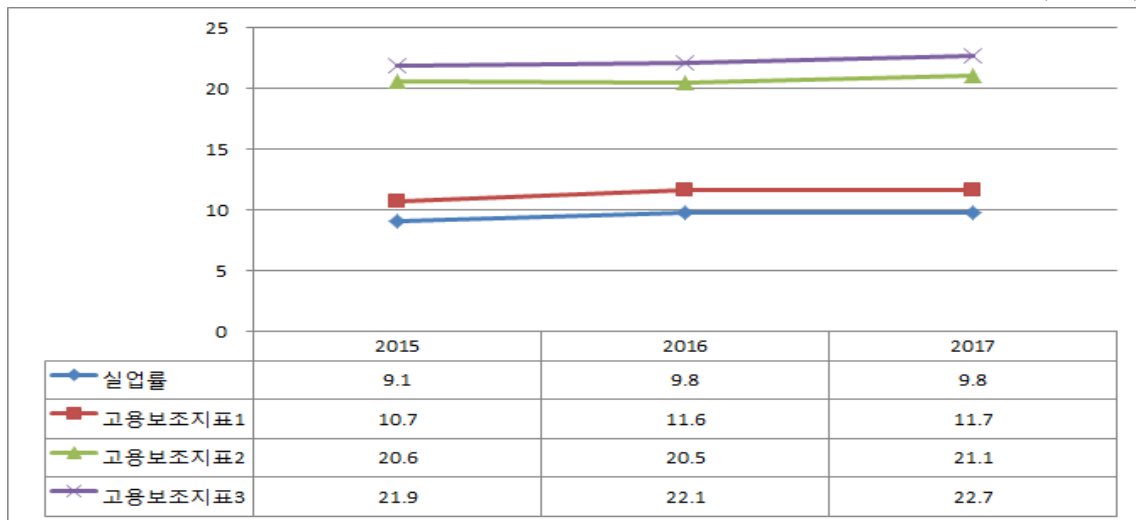
<표 IV-7> 고용보조지표의 정의

고용지표	정의
실업률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1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2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3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 \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자료: 통계청, 통계별설명자료조회(<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inputYear=2017>)

[그림 IV-3] 청년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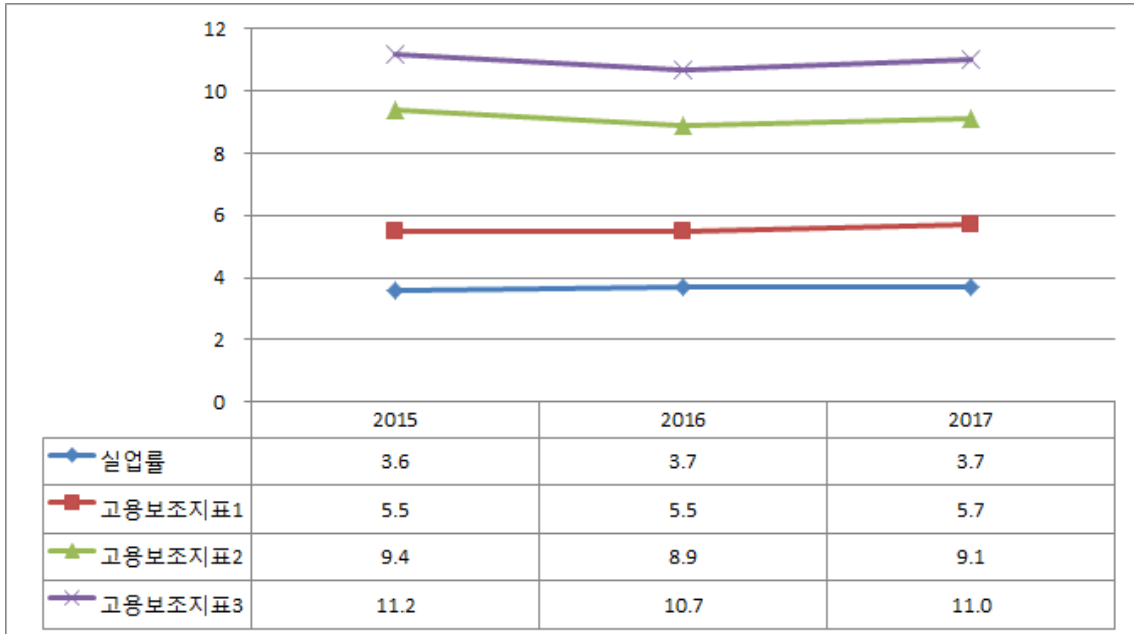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V-4] 전체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다만 청년구직자 중 상당 부분은 잠재구직자로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의 경우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2 중 실업률과 차이가 큰 것은 고용보조지표2임
 - 이는 청년구직자의 경우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보다는 대부분 잠재경제활동인구인 것을 의미함
 - 한편 전체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대부분은 잠재구직자인 것으로 파악됨
 - 청년에 대한 해당 지표가 없어 전체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분해보면 2017년의 경우 잠재구직자가 96.77%로 대부분임
 - 이에 청년의 경우에도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잠재구직자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잠재구직자의 경우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대학졸업을 연기하거나, 공무원시험,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
 - 즉, 해당 통계는 중소기업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공급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중소기업 일자리의 양적인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인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현재 잠재구직자인 청년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V-8> 잠재경제활동인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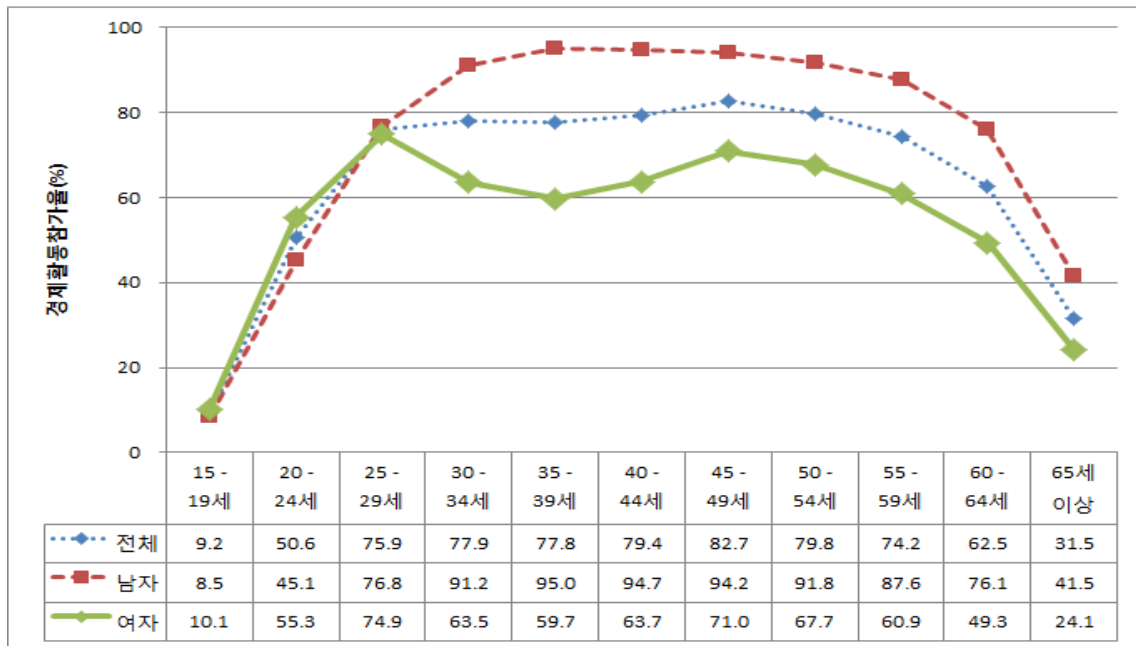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연도	잠재경제활동인구			비중	
	합계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2015	1,748	33	1,715	1.89	98.11
2016	1,576	36	1,540	2.28	97.72
2017	1,640	52	1,587	3.17	96.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M자형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 여성의 경우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9%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연령대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과도 유사한 수준임
 - 하지만 30~34세와 35~39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3.5%, 59.7%로 해당 연령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 2017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40세 이후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만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함
-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 45세 이후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50~54세 남성의 91.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 비해, 해당 연령의 여성은 67.7%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출산과 육아를 부담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다른 계층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3.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 김재진·오종현·강성훈(2015)에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 및 재정지원정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 제도와 유사·중복적인 제도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조세지출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동 제도는 고용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동수요자인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공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노동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는 제도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 노동공급자의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음
 -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등이 존재함
- 다만 아래의 두 제도는 동 제도와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 제도와 중복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기업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의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와 유사함

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용의 양적 증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는 유사함
 - 중소기업의 경우 두 제도의 중복적용이 허용됨

- 「고용증대세제」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18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임
 - 이에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동 제도와 유사하게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이지만, 현재 경과규정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해당 제도를 제외함

- 동 제도와 「고용증대세제」의 정책목적과 수단이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함

- 동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지만 「고용증대세제」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지원함
 -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규모가 차등 적용되며, 대기업을 경우 청년과 장애인 근로자 고용증대에 대해서만 지원함

<표 IV-9> 동 제도와 「고용증대세제」 비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		
지원방식	급여비례지원방식			정액지원방식		
고용증가 인원당 지원규모	구분	청년 등 (%)	그 외 (%)	구분	청년 등 (만원)	그 외 (만원)
	대기업	-	-	대기업	300	-
	중견기업			중견기업	700	450
	중소기업	100	50	중소기업	수도권 내	1,000
	* 청년 등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를 의미			수도권 밖	1,100	770
				* 청년 등은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근로자를 의미		

자료: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동 제도는 세액공제금액이 급여에 비례하는 방식인 데 반해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금액이 급여와 상관없이 일정함
 - 「고용증대세제」의 청년 및 장애인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금액은 대기업인 경우 300만원, 중견기업인 경우 70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인 경우 1,0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인 경우 1,100만원임
 - 「고용증대세제」의 청년 및 장애인이 아닌 자의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금액은 중견기업 45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770만원이며,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상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함

-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직접적인 지원이고, 동 제도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보조함으로써 「고용증대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두 제도가 중복되기보다는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제도는 「고용증대세제」와 달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이 인정됨
 -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료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고용증대세제」 또한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함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사업 중 영세한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2018년부터 고용증가 인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지원함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 2~6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표 IV-10〉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혁

시기	변경 구분	사업 내용
2012년 2월	시범사업 시행 (전국 16개 지역)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지원
2012년 7월 1일	전국 확대 시행	
2013년 1월 1일	지원대상 확대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지원
2013년 4월 1일	지원대상 확대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2014년 1월 1일	지원대상 확대	월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2015년 1월 1일	지원대상 확대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2016년 1월 1일	신규 지원자 확대 지원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60% 지원 (신규 지원자 60%, 기지원자 40%)
2016년 11월 30일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2017년 6월 28일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시기	변경 구분	사업 내용
2018년 1월 1일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및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변경	<p>※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 지원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 지원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 지원자 40%)</p> <p>※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전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전연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또는 전연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원 이상인 자</p>

자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history.asp>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이 있음
- (사업장 기준)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할 수 있음
 - 전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지원신청 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함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함
 - 전연도 월평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가능함
 - 단, 공공기관은 제외됨
 - (근로자 기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됨
 - 전연도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연도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 전연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

- (지원금액)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국가가 지원함
 - 신규 지원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90%를,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를 지원함
 - 기지원자의 경우에는 40%를 지원함

- (지원방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매월 사업주가 정해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달 보험료 부과 시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업장에 고지함
 - 또한, 사업주는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원천공제금액도 지원금액만큼 차감해서 공제해야 함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은 두루누리 사업을 포함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세제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는 없음

- 오히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사회보험료를 지원함

V.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V.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1. 종합평가

- 이중차분법을 통한 효과성 분석 결과 동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의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 고용증가에는 매출액 증가율로 대변되는 기업의 성장성이 다른 변수들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출의 특성상 수혜대상 기업이 후자기업이어야만 하고, 이와 함께 고용이 증가하는 기업은 기업이 성장단계에 있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 제도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였다고보다는 기업의 성장성 때문에 증가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동 제도의 효과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조세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하나의 조문에 해당하는 제도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혹은 배타적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됨
 - 동 제도는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고용지원제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의 영향으로 인해 동 제도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기업들은 최저한세, 중복적용 배제 등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세제혜택 중에 선택 신청함
 - 이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이 고용 혹은 투자와 같은 요건이 없어 추가적인 경영 부담이 적은 조세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이에 효과성을 근거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고용지원 조세지출의 효

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조세특례제도들을 고용친화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함

□ 특히 타당성 분석 결과 동 조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실업률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 관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및 향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노동수요자에 대한 고용의 양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고용의 양적 지원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사중손실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사중손실이란 동 제도 등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제도와 관계없이 고용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감면을 받아 실질적인 고용증대 없이 조세지출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고용의 양적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의 조세특례 중 고용과 관계없는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조세특례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중의 하나임

2. 제도 개선방안

- (제도 개선방안) 동 조세특례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제도 중 고용증대가 목적인 조항은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가령, 「고용증대세제」에서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세액공제액을 현행 제도보다 1인당 300만원(청년 등), 150만원(그 외) 추가 지원하고, 이에 대응되는 동 조세특례 항목은 삭제하는 방안임
 - 또한 동 제도와 「고용증대세제」의 세제혜택 우대계층 판단 기준 등이 상이하 여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임

- (장점) 두 제도를 통합할 경우 세제의 간소화를 통해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제도하에서 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해야 함
 - 이 경우 청년 등 세제혜택 우대계층 판단 기준과 세액공제금액 산출방법 등이 상이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존재함

- (단점1) 동 제도를 단순히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합한다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세제혜택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업종마다 상이한데, 금융업과 같이 저위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세제혜택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석탄광업과 같이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세제혜택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단점2) 「고용증대세제」 중심으로의 통합은 급여비례지원방식이라는 동 제도의 장점과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사라질 수 있음
 - 동 제도의 세액공제금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정 비율이므로 고용증가 인원이 동일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제혜택 수준도 높음

- 동 제도의 목적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면 세액공제금액이 인건비와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동 제도가 단순히 「고용증대세제」와 같이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동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멀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함
 - 또한 정액지원방식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의 연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는 사라짐
- (단점3) 두 제도를 통합하더라도 고용증대라는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두 제도의 통합이 실질인 기업의 고용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큰 제도적 변화는 아님
- 이에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은 행정상의 간소화를 통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동 제도의 장점과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과세행정 개선사항) 국세청에서 동 제도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고용지원 조세특례 수혜기업의 고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기업은 동 제도의 신청서식을 통해 과세당국에 고용 현황을 제공하나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특히, 동 제도의 수혜대상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인건비 등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18(조기공개).
-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2~2018.
- _____,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2017. 10.
- 김재진·오종현·강성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5년도 조세지출 심층평가 II』,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 pp. 519~692.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4~2017.
- 심충진·이준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2(2), 한국세무학회, 2011. 6, pp. 235~454.
- 안종범·이영·우석진, 『조세·사회보험료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고용친화적 재정운용방안』, 고용노동부·한국재정학회, 2010.
- 윤성만·박진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2015. 8, pp. 161~188.
- 이철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2(3), 2006. 12, pp. 65~146,
- 오종현·최충,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7 조세지출 심층평가 (VII),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9.
- 전병욱·최유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중소기업연구』, 37(3), 2015, pp. 1~24.
- 전승훈,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일자리 정책연구 제3호, 2010. 8.
- 한국생산성본부, 『2017 제조업 업종별·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2017. 12.
- Angrist, J. D., and Pischke, J. S.,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2009.

<통계자료 및 웹 사이트>

-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최종접속일자: 2018. 5. 10.
_____,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최종접속일자:
2018. 5. 10.
_____,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최종접속일자:
2018. 5. 10.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retrieveEi0301Info.do>, 최종접속일자:
2018. 5. 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종접속일자: 2018. 8. 7.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230>, 최종접속일자:
2018. 5. 7.
-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 최종접속일자: 2018. 5. 7.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history.asp/>, 최종접속일자:
2018. 8. 8.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최종접속일자: 2017. 6. 2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 최종접속일자: 2018. 7. 3.
_____, 통계별설명자료조회,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inputYear=2017>, 최종접속일자:
2017. 5. 16.

부 록



부 록 I. 고용보험료율

〈부표 I -1〉 고용보험료율

(단위: %)

구분		2011년 4월 1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 6월 30일		~ 현재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합계		0.55	0.8~1.4	0.65	0.9~1.5
실업급여		0.55	0.55	0.65	0.65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제외)	-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0.85

자료: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부표 I -2〉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주: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부 록 II.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부표 II -1>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354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61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11
	채석업	246		수제품 제조업	17
	석회석광업	76		기타 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건설업		37
제조업	담배 제조업	9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	14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25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화물자동차운수업	73
	목제품 제조업	51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항공운수업	7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인쇄업	16		창고업	16
	화학제품 제조업	18		통신업	1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임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어업	어업	314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85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24	농업		29
	유리 제조업	20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2
	시멘트 제조업	26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46		기타의 각종 사업	10
	금속 제련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도금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금융 및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 해외파견자: 17/1,00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20	* 주한미군: 7/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2. 1.

<부표 II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340	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10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29		수제품 제조업	16
	채석업	238		기타 제조업	31
	석회석광업	7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기타 광업	67	건설업	37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20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8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화학제품 제조업	17		창고업	1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통신업	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임업	80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어업	252
	유리 제조업	17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8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농업	27	
	시멘트 제조업	27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42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 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전문기술서비스업	6
	도금업	2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2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3. 1.

<부표 II -3>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340	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19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04		수제품 제조업	16
	채석업	285		기타 제조업	30
	석회석광업	8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기타 광업	71	건설업	38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20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8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소형화학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2		화물자동차운수업	7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화학제품 제조업	17		창고업	1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통신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임업	87
	고무제품 제조업	23	어업	어업	202
	유리 제조업	16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21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농업	27	
	시멘트 제조업	28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41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 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금업	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1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4. 1.

<부표 II -4>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340	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
	금속 및 비금속 광업	84		수제품 제조업	16
	채석업	338		기타 제조업	29
	석회석광업	8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기타 광업	69	건설업	38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19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8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소형화학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1		화물자동차운수업	6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6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8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화학제품 제조업	17		창고업	14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통신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		임업	89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어업	162
	유리 제조업	15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2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0	농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9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0		기타의 각종 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금업	1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0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5. 1.

<부표 II -5>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340	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수제품 제조업	16
	채석업	325		기타 제조업	28
	석회석광업	7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기타 광업	71	건설업	38	
제조업	식품제조업	19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8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화물자동차운수업	6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9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화학제품 제조업	17		창고업	14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통신업	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입업	89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어업	130
	유리 제조업	15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농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7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 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금업	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6. 1.

<부표 II -6>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323	수제품 제조업	1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기타 제조업	27	
제조업	식품제조업	1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담배제조업	8	건설업	3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9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통신업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화학제품 제조업	16		창고업	13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통신업	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임업	90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36
	유리 제조업	15	농업	2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6
	시멘트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2		기타의 각종 사업	10
	금속제련업	11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금업	1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7. 1.

<부표 II -7>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단위: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면역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1	건설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9
	식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운수 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고업	13	
	펄프·지류제조업	24	통신업	11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	임업	90	
	화학제품제조업	16	어업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3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농업		26	
제조업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8	기타의 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6
	고무제품 제조업	21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기타의 각종 사업	10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6		사업서비스업	9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제련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금업	17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6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0
	수제품 제조업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기타 제조업	27		금융 및 보험업	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 해외파견자: 16/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018. 1.

부 록 III. 2016년 결산법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부표 III-1〉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자산 규모별)

집단 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F)	(G)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E)				
(단위: 개, 백만원, %)													(H=F/D*100)	(I=F/B*100)
전체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5억원 이하	656		34,148	52	1,103	1.68	766	1.17	69,466	2.244				
5억원~10억원	501		58,768	117	2,430	4.85	1,453	2.90	59,799	2.472				
10억원~20억원	554		111,077	200	4,907	8.86	2,696	4.87	54,931	2.427				
20억원~50억원	729		345,019	473	15,665	21.49	8,279	11.36	52,849	2.400				
50억원~100억원	509		476,753	937	20,687	40.64	7,608	14.95	36,776	1.596				
100억원~200억원	382		747,788	1,958	30,968	81.07	8,794	23.02	28,398	1.176				
200억원~500억원	315		1,262,968	4,009	52,991	168.22	10,220	32.44	19,286	0.809				
500억원~1,000억원	124		1,027,203	8,284	43,077	347.40	5,291	42.67	12,283	0.515				
1,000억원~5,000억원	33		634,635	19,231	26,094	790.73	2,213	67.05	8,480	0.349				
5,000억원 초과	1		26,461	26,461	2,163	2,163.32	589	588.75	27,215	2.225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I-2〉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자본금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E)	금액
전체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5,000만원 이하	145		6,275	43	405	2.79	253	1.74	62.421	4.029				
5,000만원~1억원	205		6,630	32	204	1.00	172	0.84	84.384	2.598				
1억원~5억원	1,019		107,076	105	4,035	3.96	2,708	2.66	67.120	2.529				
5억원~10억원	526		127,421	242	6,097	11.59	3,421	6.50	56.105	2.685				
10억원~50억원	1,105		790,783	716	37,500	33.94	15,883	14.37	42.355	2.009				
50억원~100억원	354		729,671	2,061	31,205	88.15	8,321	23.51	26.665	1.140				
100억원~500억원	392		1,968,039	5,021	83,171	212.17	13,865	35.37	16.670	0.704				
500억원~1,000억원	46		562,283	12,224	25,498	554.30	2,216	48.17	8.690	0.394				
1,000억원 초과	12		426,643	35,554	11,969	997.45	1,069	89.12	8.934	0.251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표 III-3〉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등 록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금액	집단 합계	금액	집단 합계	금액		
			집단 평균 금액	(B)	(C)	(D)	(E)	(F)	(G)	
									$(H=F/D*100)(I=F/B*100)$	
전체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1,000만원 이하	140	714	5	23	0.16	20	0.15	89.148	2.851	
1,000만원~5,000만원	540	14,347	27	483	0.89	373	0.69	77.384	2.603	
5,000만원~1억원	428	29,782	70	1,032	2.41	726	1.70	70.291	2.436	
1억원~2억원	582	82,042	141	2,841	4.88	1,814	3.12	63.833	2.211	
2억원~5억원	728	231,297	318	12,658	17.39	6,461	8.87	51.041	2.793	
5억원~10억원	444	306,358	690	18,747	42.22	8,004	18.03	42.694	2.613	
10억원~20억원	364	502,156	1,380	29,433	80.86	9,541	26.21	32.416	1.900	
20억원~50억원	355	1,065,122	3,000	51,707	145.65	10,767	30.33	20.823	1.011	
50억원~100억원	136	930,232	6,840	36,918	271.45	5,442	40.02	14.742	0.585	
100억원~200억원	70	920,298	13,147	33,280	475.43	3,328	47.54	10.000	0.362	
200억원~500억원	16	454,356	28,397	12,196	762.26	1,269	79.33	10.407	0.279	
500억원 초과	1	188,116	188,116	768	767.86	163	162.87	21.211	0.087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I-4〉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과세표준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A)	(B)	(C)	(D)	(E)	(F)	(G)	$(H=F/D*100)$			$(I=F/B*100)$	
전체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1,000만원 이하	171	880	5	28	0.16	25	0.15	89,275	2.837					
1,000만원~5,000만원	560	15,485	28	520	0.93	404	0.72	77,570	2.606					
5,000만원~1억원	414	30,507	74	1,072	2.59	747	1.81	69,720	2.450					
1억원~2억원	585	85,314	146	2,983	5.10	1,876	3.21	62,912	2.199					
2억원~5억원	705	230,360	327	12,692	18.00	6,498	9.22	51,199	2.821					
5억원~10억원	443	313,472	708	19,618	44.28	8,343	18.83	42,525	2.661					
10억원~20억원	362	509,304	1,407	30,029	82.95	9,557	26.40	31,827	1.877					
20억원~50억원	344	1,050,490	3,054	50,308	146.24	10,377	30.17	20,627	0.988					
50억원~100억원	139	959,237	6,901	37,446	269.40	5,614	40.39	14,993	0.585					
100억원~200억원	64	887,299	13,864	32,425	506.64	3,034	47.41	9,358	0.342					
200억원~500억원	16	454,356	28,397	12,196	762.26	1,269	79.33	10,407	0.279					
500억원 초과	1	188,116	188,116	768	767.86	163	162.87	21,211	0.087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I -5〉 2016년 결산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법인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집단 합계		집단 평균 금액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E)	금액
전체	3,804		4,724,819	1,242	200,085	52.60	47,908	12.59	23,944	1.014				
0원	258		196,964	763	35,426	137.31	4,766	18.47	13,452	2.419				
0원~1,000만원	1,365		112,735	83	9,284	6.80	2,952	2.16	31,793	2.618				
1,000만원~2,000만원	482		101,181	210	5,123	10.63	2,651	5.50	51,743	2.620				
2,000만원~5,000만원	447		187,197	419	14,081	31.50	6,358	14.22	45,152	3.396				
5,000만원~1억원	293		195,421	667	12,511	42.70	5,754	19.64	45,991	2.944				
1억원~2억원	284		316,141	1,113	16,824	59.24	5,458	19.22	32,442	1.727				
2억원~5억원	354		791,744	2,237	37,044	104.64	9,000	25.42	24,294	1.137				
5억원~10억원	162		723,488	4,466	24,360	150.37	4,498	27.77	18,465	0.622				
10억원~20억원	100		838,402	8,384	21,364	213.64	3,421	34.21	16,015	0.408				
20억원~50억원	52		867,013	16,673	18,986	365.11	2,507	48.22	13,207	0.289				
50억원~100억원	6		206,417	34,403	4,315	719.20	381	63.56	8,838	0.185				
100억원 초과	1		188,116	188,116	768	767.86	163	162.87	21,211	0.087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 록 IV.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부표 IV-1〉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종합소득금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금액	집단 평균 금액	(G)		
			금액 (B)	금액 (C)	금액 (D)	금액 (E)	금액 (F)	금액 (G)							
$\frac{(H-F/D*100)(I=F/B*100)}{(H-F/D*100)(I=F/B*100)}$															
전체	4,396		1,146,939	260.91	45,225	10.29	19,203	4.37	42.461				1.674		
1,000만원 이하	42		125	2.98	50	1.19	13	0.31	26.000				10.400		
1,000만원~2,000만원	137		1,533	11.19	79	0.58	52	0.38	65.823				3.392		
2,000만원~3,000만원	203		3,883	19.13	234	1.15	149	0.73	63.675				3.837		
3,000만원~4,000만원	215		6,109	28.41	389	1.81	252	1.17	64.781				4.125		
4,000만원~5,000만원	184		6,885	37.42	412	2.24	234	1.27	56.796				3.399		
5,000만원~6,000만원	208		9,824	47.23	597	2.87	336	1.62	56.281				3.420		
6,000만원~8,000만원	321		19,555	60.92	1,273	3.97	657	2.05	51.610				3.360		
8,000만원~1억원	305		24,394	79.98	1,580	5.18	747	2.45	47.278				3.062		
1억원~1억 5,000만원	573		65,080	113.58	3,887	6.78	1,606	2.80	41.317				2.468		
1억 5,000만원~2억원	453		73,292	161.79	3,858	8.52	1,323	2.92	34.292				1.805		
2억원~3억원	651		152,611	234.43	7,226	11.10	2,838	4.36	39.275				1.860		
3억원~5억원	573		213,661	372.88	7,250	12.65	2,629	4.59	36.262				1.230		
5억원~10억원	379		251,576	663.79	8,985	23.71	4,013	10.59	44.663				1.595		
10억원 초과	152		318,412	2,094.82	9,404	61.87	4,353	28.64	46.289				1.367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V-2>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과세표준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합계		집단 평균		집단 평균 금액	(G)	(H=F/D*100)			(I=F/B*100)
	(A)	(B)	(C)	(D)	(E)	(F)	(G)									
전체	4,396	1,146,939	260.91	45,225	10.29	19,203	4.37	42.461	1.674							
1,200만원 이하	125	865	6.92	88	0.70	43	0.34	48.864	4.971							
1,200만원~2,500만원	290	5,378	18.54	324	1.12	198	0.68	61.111	3.682							
2,500만원~3,500만원	218	6,517	29.89	419	1.92	266	1.22	63.484	4.082							
3,500만원~4,600만원	242	9,825	40.60	587	2.43	332	1.37	56.559	3.379							
4,600만원~6,000만원	264	13,966	52.90	875	3.31	454	1.72	51.886	3.251							
6,000만원~7,000만원	163	10,709	65.70	702	4.31	363	2.23	51.709	3.390							
7,000만원~8,800만원	294	23,253	79.09	1,460	4.97	701	2.38	48.014	3.015							
8,800만원~1억원	140	13,109	93.64	905	6.46	425	3.04	46.961	3.242							
1억원~1억 5,000만원	564	69,834	123.82	4,002	7.10	1,594	2.83	39.830	2.283							
1억 5,000만원~2억원	428	74,073	173.07	3,735	8.73	1,291	3.02	34.565	1.743							
2억원~3억원	629	154,830	246.15	7,352	11.69	2,833	4.50	38.534	1.830							
3억원~5억원	528	204,466	387.25	6,912	13.09	2,527	4.79	36.560	1.236							
5억원~10억원	360	242,688	674.13	8,464	23.51	3,827	10.63	45.215	1.577							
10억원 초과	151	317,426	2,102.16	9,400	62.25	4,351	28.81	46.287	1.371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V-3〉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결정세액 규모별)

(단위: 개, 백만원, %)

집단 구분	신고인원 수		과세표준				총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동 특례 비중	실효 세율 감소
	개수 (A)	(B)	집단 합계 금액	집단 평균 금액 (C)	집단 합계 금액 (D)	집단 평균 금액 (E)	집단 합계 금액 (F)	집단 평균 금액 (G)	(H=F/D*100)	(I=F/B*100)					
											2016년	2015년			
전체	4,396	1,146,939	260.91	10.29	45,225	19,203	4.37	42.461	1.674						
0원	125	2,199	17.59	2.84	355	103	0.82	29.014	4.684						
0원~500만원	1,038	38,516	37.11	2.95	3,059	1,720	1.66	56.228	4.466						
500만원~1,000만원	418	31,948	76.43	6.47	2,703	1,153	2.76	42.656	3.609						
1,000만원~1,500만원	252	24,180	95.95	6.94	1,748	792	3.14	45.309	3.275						
1,500만원~2,000만원	157	18,732	119.31	9.38	1,473	503	3.20	34.148	2.685						
2,000만원~3,000만원	356	50,007	140.47	9.49	3,380	1,353	3.80	40.030	2.706						
3,000만원~4,000만원	261	43,597	167.04	9.43	2,462	1,120	4.29	45.491	2.569						
4,000만원~5,000만원	206	39,897	193.67	9.47	1,950	719	3.49	36.872	1.802						
5,000만원~6,000만원	193	43,270	224.20	10.87	2,098	666	3.45	31.745	1.539						
6,000만원~8,000만원	296	78,015	263.56	10.81	3,201	1,184	4.00	36.988	1.518						
8,000만원~1억원	218	68,910	316.10	12.34	2,691	1,010	4.63	37.533	1.466						
1억원~2억원	535	247,436	462.50	16.26	8,700	3,431	6.41	39.437	1.387						
2억원~3억원	169	124,894	739.02	18.12	3,063	1,411	8.35	46.066	1.130						
3억원~5억원	94	108,218	1,151.26	33.54	3,153	1,458	15.51	46.242	1.347						
5억원 초과	78	227,121	2,911.81	66.51	5,188	2,580	33.08	49.730	1.13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